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대한민국 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세제	3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3
● 에너지세율 조정	4
02 안전행정·외교	6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6
● 여행경보 신호등제도 도입	8
03 산업·특허·원자력	9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9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신설	11
●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12
●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13
● 특허부터 상표·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14
●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15
●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	16
04 환경·국토	19
● 친환경 위장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시행	19
●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21
● 반복적, 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22
●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 강화	23
● 물질약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	2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 강화	25
●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	27
●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28
●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29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30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31
●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 확대	32
● 중개사무소 개업 이외에 종사자로 취업하는 때도 교육이수 필요	33
●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35
●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36
● 산업단지 계획 변경 제한 완화	37
●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39
●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40
● 보증제도 운영 강화로 하도급업체 등 보호 강화	41
●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42
● 우리나라 물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43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44
● 시도별 물류단지 실수요만 검증 되면 적기 건설 가능	45
● 화물운송종사자 권리보호 제도 강화	47
● 직접운송의무제 예외조항 확대	48
●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9
●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형) 구조변경 허용	51
●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52
●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54
● 항공기사용사업분야 안전관리 강화	55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56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57
● 친환경 천일염인증 등 고품질 국산천일염에 대한 인증제 시행	59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홍합, 다시마) 확대	60
● 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 측정제도 폐지	61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62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63
●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64
●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65
● 도서민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67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기관 확대	69

... CONTENTS

● 향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기간 확대	70
● 향만재개발 사업 등에 민간투자 유치 확대	71
● 향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 가능	73

05 보건복지·여성·법무 74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74
●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75
●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76
●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77
●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78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79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80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82
●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83
●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84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85
●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87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8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89
●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91
●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93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94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한층 강화로 수요자 안심하고 참여 가능	95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맞춤형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 운영	97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98
●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실효성 강화	99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강화	100
●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10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03

06 고용노동 105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105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107
-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108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109
-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110
-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111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112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11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115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116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117

07 보훈·국방·병무 118

-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118
- 금품수수 · 공금횡령자 징계시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119
- 군인 및 군무원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120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 군무원의 직종 통합 12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 122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123
- 조달예비판단 정보 조기 공개 124
-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125
- 국방분야 참여 업체의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방법 개선 126
- 성숙된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 127
-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128
- 복무관리위반 위반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 부과 129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130

CONTENTS

08 교육·문화·통신·R&D 131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131
-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13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33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 제도 마련·시행 134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135
-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136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137
-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138
- 출판문화 융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139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소비자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40
-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143
-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 도입 144
-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146
-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개편 147
-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148
-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 149

09 농식품·산림 150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역 제한 폐지 150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151
-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 의무 폐지 153
-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154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155
-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 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156
-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157
- 인삼경작 신고기관 시·군 등으로 확대 158
- 단감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159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0
-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161
- 2014년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162
- 산지규제 완화 163

●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164
●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	165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166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167
●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완화	168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169
●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 요건 완화	170
● PIC/S 가입으로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17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소 설치 확대 운영	174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175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77
●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해섽 의무적용 확대 등	178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179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180
●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통합 및 치약제 불소 함량 상향	181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183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도입	184
●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186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187

10 공정거래·조달 189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189
● 과징금 감경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강화	191
● 보증기간 확대 등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 개선	193
●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195
●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196
● 아파트단지 등 민간에 전자조달 포털서비스 제공	198
●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200
● 해외 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품 소비재로 확대	201
● 사후관리물품의 휴일 긴급상황 발생 시 ‘사후 수출승인’ 시행	202

CONTENTS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205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205
2. 에너지세율 조정	205
● 안전행정부	205
1.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05
● 외교부	206
1.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도입	206
● 산업부	206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206
2.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 사업 신설	207
3.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207
● 특허청	208
1.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208
2. 특허부터 상표·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208
3.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209
● 원자력안전위원회	209
1.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	209
● 환경부	211
1. 친환경 위장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시행	211
2.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212
3. 반복적, 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212
4.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은 강화	213
5. 물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213
6.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 강화	214

● 국토교통부	215
1.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	215
2. 기업 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215
3.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215
4.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216
5.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217
6.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 확대	217
7. 중개사무소 개업 이외에 종사자로 취업하는 때도 교육이수 필요	217
8.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217
9.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218
10. 산업단지 계획 변경 제한 완화	218
11.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219
12.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219
13. 보증제도 운영 강화로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219
14.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219
15. 우리나라 물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220
16.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20
17. 시도별 물류단지 실수요만 검증되면 적기 건설 가능	220
18. 화물운송종사자 권리 보호 제도 강화	220
19. 직접운송의무제 예외 조항 확대	221
20.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1
21.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221
22.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221
23. 안전 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222
24. 항공기 사용사업분야 안전관리 강화	222
● 해양수산부	222
1.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222
2.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223
3. 친환경 천일염인증 등 고품질 국산천일염에 대한 인증제 시행	224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224
5. 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 측정제도 폐지	224
6.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225

CONTENTS

7.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해역 확대 도입	225
8. 컨테이너 하역 요금 관리체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225
9. 항만 배후단지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226
10. 도서민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227
11.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기관 확대	227
12.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기간 확대	227
13. 항만재개발 사업 등에 민간투자 유치 확대	228
14.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	230
● 보건복지부	230
1.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230
2.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230
3.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230
4.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231
5.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231
6.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232
7.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32
8.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232
9.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232
10.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233
11.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233
12. 장애인 응급알림e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233
13.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233
14.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234
15.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34
16.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234
17. 65세이상 대부분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235
● 여성가족부	235
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한층 강화	235
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맞춤형 치유를 위한 상설기관 운영	236
3.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236
4.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236
5.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강화	236

● 법무부	237
1.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237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38
● 고용노동부	239
1.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축소	239
2.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신용카드납부 허용	240
3.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240
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240
5.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인가 제한	240
6.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241
7.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241
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241
9.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242
10.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242
1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243
● 국가보훈처	243
1.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243
● 국방부	243
1. 금품수수·공금횡령으로 징계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243
2. 군인·군무원의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243
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 군무원의 직종 통합	243
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	244
● 방위사업청	244
1.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244
2. 조달예비판단 정보 조기 공개	244
3.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244
4. 국방분야 참여 업체의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방법 개선	245
5. 성숙된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	245

CONTENTS

● 병무청	245
1.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245
2. 복무관리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 부과	246
3.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246
● 교육부	246
1.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246
2.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246
● 문화체육관광부	246
1.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46
2.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제도 마련·시행	247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47
4. 3년 단위 호텔 등급평가 의무화	247
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247
6.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248
7. 출판문화 융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248
● 미래창조과학부	249
1.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소비자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49
2.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250
3.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음량 기준 도입	251
4.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251
5.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개편	251
6.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251
● 방송통신위원회	252
1.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 조성	252
● 농림축산식품부	252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역 제한 폐지	252
2.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252
3.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의무 폐지	253

4.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253
5.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253
6.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 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254
7.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254
8. 인삼경작 신고기관 시·군 등으로 확대	254
9. 단감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254
10.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254
11. 발농업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255
12. 2014년도 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255
● 산림청	255
1. 산지규제 완화	255
2.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256
3.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	256
4.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	256
5.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257
6.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완화	257
7.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257
8.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 요건 완화	258
● 식품의약품안전처	260
1. PIC/S 가입으로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260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소 설치 확대 운영	260
3.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260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261
5.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해섵 의무적용 확대 등	261
6.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262
7.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262
8. 의약품 마스크 분류 통합 및 치약제 불소함량 상향	262
9.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263
10.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도입	263
11.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263
12.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 기관 통합 관리	264

CONTENTS

● 공정거래위원회	265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265
2. 과징금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강화	265
3. 보증기간 확대 등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 개선	266
4.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267
● 조달청	267
1. 창업초기 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267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267
● 관세청	268
1. 해외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쏘 소비재로 확대	268
2. 사후관리물품의 휴일 긴급상황 발생시 ‘사후 수출승인’ 시행	268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4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13
● 특허부터 상표·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14
● 중개사무소 개업 이외에 종사자로 취업하는 때도 교육이수 필요	33
●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9
●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75
●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76
●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77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113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	122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123
●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125
● 국방분야 참여 업체의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방법 개선	126
● 성숙된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	127
● 사회복지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128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137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역 제한 폐지	150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151
●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의무 폐지	153
● 해외 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소 소비제도 확대	201

’14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3
● 에너지세율 조정	4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9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신설	11

CONTENTS

●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12
●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15
●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은 강화	23
● 물질약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	2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 강화	25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31
●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 확대	32
●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35
●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36
● 산업단지 계획 변경 제한 완화	37
● 시도별 물류단지 실수요만 검증 되면 적기 건설 가능	45
●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형) 구조변경 허용	51
●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52
● 친환경 천일염인증 등 고품질 국산천일염에 대한 인증제 시행	59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홍합, 다시마) 확대	60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63
●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65
● 도서민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67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80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85
●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87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8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89
●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91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94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한층 강화로 수요자 안심하고 참여 가능	95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맞춤형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 운영	97
●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실효성 강화	99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강화	100
●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102
●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108
●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111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112
●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118
● 군인 및 군무원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120
●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13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33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 제도 마련·시행	134
●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138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167
●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완화	168
● PIC/S 가입으로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획기적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172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179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도입	184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187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189
●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196
● 사후관리물품의 휴일 긴급상황 발생 시 ‘사후 수출승인’ 시행	202

8월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6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44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57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62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74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79
●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11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115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 군무원의 직종 통합	121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130
●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143
●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146
●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148
●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154
●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 요건 완화	170

CONTENTS

● 과징금 감경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강화	191
●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195
●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기업체 수주기회 확대	200

9월

● 친환경 위장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시행	19
●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21
● 반복적, 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22
●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64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기관 확대	69
● 항만재개발 사업 등에 민간투자 유치 확대	71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82
●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83
●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8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03
●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93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10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107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109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116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117
●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136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155
●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 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156
●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157
● 인삼경작 신고기관 시·군 등으로 확대	158
●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164
●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	165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169
●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통합 및 치약제 불소 함량 상향	181

10월

●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28
●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29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30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소비자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40
● 산지규제 완화	163

11월

●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	16
●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39
●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40
● 보증제도 운영 강화로 하도급업체 등 보호 강화	41
●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54
● 항공기사용사업분야 안전관리 강화	55
● 향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기간 확대	70
● 조달예비판단 정보 조기 공개	124
● 복무관리 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 부과	129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131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135
● 출판문화 융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139
●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 도입	144
● 단감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159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183
●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186
● 보증기간 확대 등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 개선	193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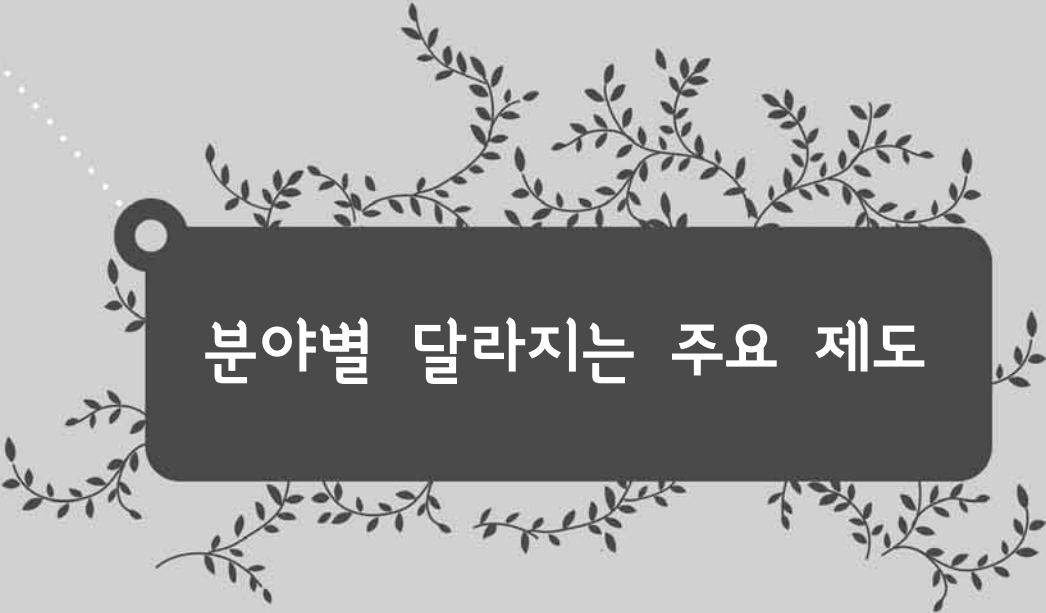
●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	27
●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42
● 우리나라 물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43
● 화물운송종사자 권리보호 제도 강화	47
● 직접운송의무제 예외조항 확대	48

CONTENTS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56
● 금품수수·공금횡령자 징계시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119
●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개편	147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0
● 발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161
● 2014년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162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166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소 설치 확대 운영	174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175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77
●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해서 의무적용 확대 등	178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180
● 아파트단지 등 민간에 전자조달 포털서비스 제공	198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여행경보 신호등제도 도입	8
● 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 측정제도 폐지	61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 가능	73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98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2. 안전행정 · 외교	6
3. 산업 · 특허 · 원자력	9
4. 환경 · 국토	19
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74
6. 고용노동	105
7. 보훈 · 국방 · 병무	118
8. 교육 · 문화 · 통신 · R&D	131
9. 농식품 · 산림	150
10. 공정거래 · 조달	189

01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추진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현행 :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 개정 :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 시행일 : 2014월 7월 1일



에너지 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253)

■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고,
 - 현행 : 비과세
 - 개정 :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인 물품 : 19원/kg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 17원/kg
-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 부생연료유1호(등유형)·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과세가 완화됩니다.
 - LNG : 현행 60원/kg → 42원/kg으로 완화
 -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등유형) : 현행 104원/ℓ → 72원/ℓ으로 완화
 - 프로판(가정·상업용) : 현행 20원/kg → 14원/kg으로 완화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에너지세율 조정

■ 추진배경 : 에너지세율 조정

■ 주요내용

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추가

- 현행 : 비과세
- 개정 :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인 물품 : 19원/kg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 17원/kg

② 전기대체연료 과세 완화

- LNG : 현행 60원/kg → 42원/kg으로 완화
-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등유형) : 현행 104원/ℓ → 72원/ℓ으로 완화
- 프로판(가정·상업용) : 현행 20원/kg → 14원/kg으로 완화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02 안전행정 · 외교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1738)

■ 2014년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추진배경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14.8.7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②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술적 조치 : 암호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등
 관리적 조치 :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접근권한 차별화 등
 물리적 조치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

③ 법령 정비 입법례 및 우수 사례, 지원체계, Q&A 사례 등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입법례, 시범 전환 사례(20개 업체)
-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등 전담 지원창구 안내

기존의 여행경보제도 대신 여행경보 신호등제도 도입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7)

- 기존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대신 여행경보 신호등제도(남색경보- 여행유의, 황색경보- 여행자제, 적색경보- 철수권고, 흑색경보- 여행금지)를 도입 예정
- 현행 단계별 여행경보 제도하에서는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상 여행 금지 국가에 못지않게 위험함에도 그 위험성이 시각적, 직관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대두
 -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의 경우, 국가단위로만 발령이 가능하여 한 국가 내 일부 지역만 위험할 경우 3단계 발령만이 가능
 - 3단계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목적으로 여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각할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신호등제도 도입과 아울러, 적색경보의 설명을 ‘여행제한’대신 ‘철수권고’로 변경
- 금년 하반기 여행경보 신호등제도 도입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순차 반영 예정

☞ (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여행경보제도

03 산업 · 특허 · 원자력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7)

- 종전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 1월 동법 개정을 통해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포함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합성천연가스 : 석탄을 주원료하여 고온·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이에 따라 민간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년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신설되는 주요사항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허가에 관한 서식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5조),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자가소비 외에 제3자에게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고자 하는 때의 처분조건, 절차 등을 규정하며(시행령(안) 제1조의5제2항~제4항)
 - 또한,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시행령(안) 별표 1)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시행규칙(안) 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2항제6호, 제25조 제3항제6호 및 별표 6의5)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 추진배경 :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인정할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서식 마련 및 세부기준 규정
-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자가소비 외에 제3자에게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고자 하는 때의 처분조건, 절차 등을 규정
-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기준 규정
- ④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규정

■ 시행일 : 2014년 7월 22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7)

- 종전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 1월 동법 개정을 통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민간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을 통해 '14년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신설되는 주요사항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허가에 관한 서식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시행규칙(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5조),
 - 제조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기준을 규정하고(시행령(안) 별표 1),
 - 제조·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였음.(시행규칙(안) 제17조 제4호·제5호, 제23조제2항제4호·제5호, 제25조제2항제4호·제5호, 제26조제3항제4호·제5호 및 별표 6의3·별표 6의4)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신설

- 추진배경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보급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으로 규정
- 주요내용
 - 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서식 마련 및 세부기준 규정
 - ②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기준 규정
 - ③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을 규정
- 시행일 : 2014년 7월 22일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7)

-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 LNG트레이딩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민간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대상 등 세부사항 마련을 통해 '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사항은 천연가스반출입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시행령(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 사업영위를 위한 신고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안) 제10조의 5제2항~제5항, 시행령(안) 제2조의2제1항),
- 천연가스 반입·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시행규칙(안) 제10조의9제3항)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추진배경 : 셰일가스 공급확대, 동북아 LNG시장 확대 등 국제 LNG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반출입업 도입의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① 보세구역내 발생한 증발가스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규정
- ②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절차, 방법 및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신고하도록 규정
-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반입·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시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절차 등 규정

■ 시행일 : 2014년 7월 22일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7)

특허청 등록과 (☎ 042-481-5233)

■ 특허권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또한, 특허권 회복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하였습니다.
- 완화된 회복 요건은 2014년 6월 1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 회복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 주요내용

- ① 특허권 회복 대상을 실시 중인 특허발명에서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
- ② 특허권 회복을 위한 납부료를 정상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의 2배로 인하
- ③ 2014년 6월 1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 회복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다만, 회복 신청 가능 기간은 현행과 동일)

■ 시행일 : 2014년 6월 11일

특허부터 상표·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 042-481-5398)

-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일괄심사 제도는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 4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출원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일괄심사 신청을 위하여 제품 사진과 거래 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중 하나만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KIPO News > 보도자료 > 신제품의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로 ‘한 방에’

●●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 제도

- 일괄심사란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일괄하여 심사 처리
- 일괄심사 대상 : 실시관련출원, 수출관련출원,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출원, 1인 창조 기업 출원
- 신청방법 : 신청인 정보,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 심사착수희망일 및 기술설명을 기재하여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하여 신청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 042-481-8519)

■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 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할 예정

-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경우 ‘물건인지 방법인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왔으나,
-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4년 7월 1일 출원부터 하드웨어와 결합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청구항 말미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도 특허로 인정 가능

*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플랫폼,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OS) 등이 있음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간행물 > 심사지침, 기준, 매뉴얼 > 특허·실용신안심사지침서 >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 심사지침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 추진배경 : 하드웨어와 결합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 주요내용

- ①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특허로 보호
- ②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것」도 특허로 인정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출원부터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3), 원자력심사과 (☎ 02-397-7217),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방재환경과(☎ 02-397-7353), 감사조사담당관(☎ 02-397-7245)

■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원전 품질비리 감시대상이 확대 됩니다.
 - 기존의 원자력사업자 뿐 아니라 원전 부품 및 기기의 설계·제작·성능·검증 업체까지 감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합니다.
- 원자력안전법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과징금의 경우 현행 5천만원인 상한액을 원자력분야는 최대 50억, 방사선 분야는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과태료 상한액 역시 기존의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 제보 시에는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받게 됩니다.

■ 방사선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기존에 허가기준으로만 제시했던 인력요건을, 앞으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피폭 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원전 사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경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5km 범위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30km 범위 이내 지역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는 물론, 재난규모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가 마련됩니다.

- 국제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 핵물질방호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핵안보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 핵물질로만 국한된 범죄행위 처벌을 방사성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등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 범죄자 처벌조항 (핵물질 등을 이용한 강요·협박, 범죄 목적으로 핵물질 등 소지·제조 등)이 추가되며, 핵테러 등 범죄정보를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 방호 교육·훈련 사항을 추가하여 책임이 강화됩니다.

☞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쉽게 이해하는 안전규제 >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 이후 어떻게 달라질까요?('14.04.11)

●● 원자력안전 규제 강화

■ 추진배경 :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안전 사고 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도모

■ 주요내용

- ① 품질비리 감시대상 확대(원자력관계사업자 → 원자력관계사업자, 부품 및 기기설계·제작·성능·검증업체)
- ② 원자력안전법 위반시 처벌 강화(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원자력분야 50억원 이하, 방사선분야 5억원 이하,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③ 원전비리 제보 활성화(포상금 지급, 본인연류 제보시 제보자 형량 감면)
- ④ 방사선안전관리자 의무화(허가기준으로만 인력요건 의무 부여 → 인력요건 의무 부여,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및 역할 부여)
- ⑤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화(발주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의무 부여)
- ⑥ 원전 사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 보완·강화(고시에 위임 → 법률로 상향 조정)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설치점 기준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3~5km 이내, 긴급보호 조치계획구역 : 20~30km 이내)
- ⑦ 핵 관련 범죄대상 확대(핵물질 →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

■ 시행일 : 2014년 11월(①~⑥항목), 2014년 8월(⑦항목)

04 환경 · 국토

친환경 위장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 · 광고 감시 · 관리 시행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69)

■ 환경부는 ‘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 · 광고 감시 · 관리」를 시행('14. 9.25)할 계획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 · 광고가 금지됩니다.
 - 환경부장관은 기업에서 표시 · 광고한 내용에 대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받은 기업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 · 광고 행위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환경성 표시 · 광고 행위를 한 자와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 동 제도의 운영으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시장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친환경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 · 해명 > 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친환경 위장제품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질서 확립

■ 주요내용

- ① 제품의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부당한 표시·광고 :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 ②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자료 요구 및 중지 명령
- ③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시행령 규제심사 중)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9)

■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의 교실을 어린이활동 공간으로 지정하여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2014년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이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되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로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료나 마감재료의 환경안전관리기준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확대 및 유해 어린이용품
공표관련 입법예고

● 2014년도 초등학교 내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어린이의 활동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환경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
- 주요내용
 - ① 초등학교 내 도서관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 도서관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중금속 기준 적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반복적, 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현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을 **반복 초과**(‘초과 횟수 누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용중지**’에서 ‘**조업정지**’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이 **1억원**까지 상향되고,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벌칙**으로 강화됩니다.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 반복적 악취피해 유발사업장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반복적, 고질적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장 관리 강화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주요내용

- ①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계속 초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명칭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
- ② 악취 배출허용기준 반복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확대 적용
- ③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 상향(5천만원→1억원)
- ④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장 벌칙 강화(2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심사 중)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 강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044-201-74)

-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과 관련된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며,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와 민간단체가 설치됩니다.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는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품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환경성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고 관련기업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가 설립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허용, 품질검사는 강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 수입 허용
-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시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 기준 강화
- ③ 폐자원에너지센터 설치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4년 7월 22일(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중)

물절약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044-201-7115)

■ 물 다량 사용업자가 절수기기 설치 시 과도한 비용 지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물절약 전문업 등록 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입니다.

- 물절약 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이란, 절수기 업체가 누수유저감, 절수시설 설치사업 등에 자기자본을 선 투자 후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 환경부는 지금까지 ‘물절약 투자대행 13개 업체 풀(Pool)’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군부대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 검증을 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등록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누구나 환경부에 등록 후 물절약 전문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물절약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 현황은 국가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투명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절약 전문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물절약 전문업자의 등록기준 부합여부 확인,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자료 > 수도물 사용량 줄이는 물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추진배경 : 물절약 전문업자가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갖추도록 유도하고, 전문 업체 중심의 물절약사업(WASCO)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① 물절약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등록기준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② 물절약 전문업체 목록 국가수도정보센터에 공개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8)

■ CITES 협약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시설 및 관리기준이 없어, 소유자의 효율적인 사육 관리가 어려우며, 잘못된 사육 관리로 동물 학대 및 탈출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2014년 7월 17일부터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4.7.17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종 호랑이, 곰, 악어 등 90종을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으로 지정하여 등록·관리 할 예정이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등 소유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유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존을 위해 거래를 제한하고, 수출입 시 종의 생존에 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동종의 수출·입 허가 및 사·시설 등록(변경) 신고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자료 >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 기준이 없어 불법거래, 동물학대, 탈출 등의 발생 문제점을 개선

■ **주요내용**

-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신고를 양도·양수 신고로 변경
-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 ③ 적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입수경위 증명서류 보관
- ④ 인공증식허가 대상 및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 등록제 실시
- ⑤ 등록 사육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년 1회)
- ⑥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시행일** : 2014년 7월 17일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4)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폭을 넓히고,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은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지금까지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공공시설 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용 토지 등에 한정하고 절차상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되, 원형지 공급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급의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4년도 새만금개발사업 추진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유도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 주요내용
 - ①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외투기업등 추가)
 - ②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심의절차 폐지, 공급범위 한도만 설정)
- 시행일 : 2014년 12월(잠정, 관계부처 의견조치 중)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85)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게 규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를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기업도시 계획기준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게 규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 곤란
- 주요내용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개선
- 시행일 : 2014년 10월(잠정, 계획기준 행정예고 중)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9)
 행복도시건설청 도시발전정책과(☎ 044-200-3131)

- 하반기부터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에 대해서 건축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이 완료되어,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자족시설의 유치를 통한 도시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이에 행복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 자족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특별법('13.8)과 시행령을 개정('14.2)하고, 시행령에서 재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안)』이 마련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신행정수도법

● ●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개요

- 추진배경 : 행복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 자족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13.8) 후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기준 수립
- 주요내용
 - ① 자족시설(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건축비 지원
- 시행일 : 2014년 10월 시행예정(관계부처 협의 중)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기반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기반시설에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의시설만 설치 할 수 있어 주민들이 한 시설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하나의 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편의시설로 복합설치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14.10월부터 규칙이 개정되어 기반 시설에 다양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기반시설에 설치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시설 활성화
- 주요내용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의 주민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대
- 시행일 : 2014년 10월(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1)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여 가격왜곡현상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하여 수도권 일부 지구의 분양가 안정 도모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중형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 중형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내용

■ 추진배경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조성원가 연동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아지는 가격왜곡 현상 등 경직적 가격체제로 인한 부작용

■ 주요내용

- ①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 조성원가(90~110%) → 감정가

■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지침 개정 중)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1)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3급 이상)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이상 장애인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는 신청대상에서 누락

※ 「국가유공자지원법」의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으로 등록 제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이상 장애인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는 신청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3급 이상) 일 경우를 추가함

■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지침 개정 중)



중개사무소 개업 이외에 종사자로 취업하는 때도 교육이수 필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에 취업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시·도 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중개업자만 실무교육을 받았으나, '14.6.5일부터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업무개시 전까지 실무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관(문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2015-9816~7,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02-585-4210,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02-557-5667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중개업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

■ 추진배경 :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

■ 주요내용

- ① 중개사무소 개설 공인중개사 및 취업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28~32시간) 이수
※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연수교육(12~16시간) 이수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 ① (개업 →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개업시 면제
- ② (소속 → 개업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개업하는 경우 면제
- ③ (소속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되는 경우 면제
- ④ (개업 → 소속공인중개사)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시 면제

- ② 취업하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3~4시간) 이수

■ 시행일 : 2014년 6월 5일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7)

■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유통·물류 등 생산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 도로 등 교통시설·용수공급시설·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고, 이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입주가능 시설이 제한되어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근로자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이나 하나의 필지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 또한 ‘복합용지’ 지역은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 재생지구에서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 산업단지의 복합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014년도 산업단지 제도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① 산업단지에 시설간 융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제도 도입
 - ②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 재생지구의 복합용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 용적률 적용
- 시행일 : 2014년 7월 15일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7)

- 민간의 자금이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등 공공 사업시행자나 공공이 출자한 법인에 한해서만 용지조성 사업 이외에 건축사업을 허용하고, 실제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실수요 기업이 공장 건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대행개발을 허용하였으나,
- 민간 사업시행자도 용지조성사업 외에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산단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대신 만드는 대행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어 기업의 수요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대행개발을 통해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014년도 산업단지 제도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 주요내용
 - ①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용지조성사업 외에 건축사업을 허용
 - ② 대행개발의 범위를 산업시설용지에서 모든 용지로 확대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 허용
- 시행일 : 2014년 7월 15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7)

■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계획하도록 하고, 유치업종에 한해서만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였고,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는 경미한 개발행위(산업단지 면적 정정, 주요 유치업종 범위내에서 배치 계획 변경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여, 계획 변경에 장기간에 소요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개발·실시계획 변경 5~6개월 → 실시계획 변경 2개월)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한 주요 업종 변경 등

■ 유치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 변경이 용이해지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단축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014년도 산업단지 제도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산업단지 내 업종변경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 ①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계획방식 도입
- ②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중요사항만 개발계획 변경대상으로 규정

■ 시행일 : 2014년 7월 15일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044-201-3511)

-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됩니다.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건설공사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①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 체불하는 건설업자 명단 공표
 - ② 저가로 낙찰된 공공공사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 시행일 : 2014년 11월 15일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044-201-3509)

-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하도급업체, 하도급공종,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 또한,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 원·하도급자간에 하도급계약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준용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정보공개 등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 추진배경 :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 하도급계약정보 공개
- ②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도급과 하도급자간에도 적용

- 시행일 : 2014년 11월 15일

보증제도 운영 강화로 하도급업체 등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044-201-3513)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할 경우 발주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이 통보됩니다.
- 신규로 보증서가 발급될 경우 뿐만 아니라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보증제도 운영 강화로 하도급업체 보호

●● 보증제도 운영 강화를 통한 하도급업체 등의 권리 보호

■ 추진배경 : 보증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하도급 업체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①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및 중도 해지시 보증기관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동 사실을 통보
- 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교부시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

■ 시행일 : 2014년 11월 15일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 044-201-3633)

■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실시간 홍수정보는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제공하였으나, 2014년 12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다양한 홍수관련 콘텐츠를 추가 개발 중으로 2015년부터는 하천구역 내 침수정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

●● 2014년도 실시간 홍수정보 앱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하천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 주요내용
 - ① 홍수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
- 시행일 : 2014년 12월

우리나라 물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044-201-3615)

■ 일반국민이 재해상황, 하천 내 레저·문화시설 등 다양한 물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토교통부 물관리 포털(wamis 등)은 기술자료 위주로 일반국민 활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개편하여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포털에서는 알기 쉬운 수자원 정보, 물이야기(역사·문화 등),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일반국민이 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물포털 서비스 구축

2014년도 물포털 서비스 구축

- 추진배경 : 물에 관한 국민 관심·이해 제고를 위하여 물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취득할 수 있는 물포털 서비스 구축
- 주요내용
 - ① 물관련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포털 서비스 구축
- 시행일 : 2014년 12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신고통개발과 (☎ 044-201-4756)

■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주요내용

-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신설

■ 시행일 : 2014년 8월 7일

시도별 물류단지 실수요만 검증 되면 적기 건설 가능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 044-201-4007)

■ 종전에는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을 제한하여 이 범위내에서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였으나 2014. 7월부터는 시도별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 되면 적기에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 현재, 경기·전북·경북·경남 등의 지자체에서 물류단지 시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제*로 인해 물류단지 확충에 애로

* 정부차원에서 5개년간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총량을 분석·고시하고, 지자체는 고시된 물량 범위내에서 물류단지를 지정

■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에 물류단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13~’17)」 변경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14.6)

- 동시에,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해오던 ‘사업 내인가’ 관행도 근절

〈 종전 〉		〈 변경 〉	
국토부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배정	➔	실수요 검증 (국토부 + 시·도 공동)
시·도	사업 내인가 실수요 검증		

■ 경기·전북 등 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일자리 9천여개 창출, 9천억원 투자 유발, 시설 적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예상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 **시도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만 되면 적기 건설 가능**

■ **추진배경** :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 **주요내용**

- ①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폐지
- ② 실수요 검증단 구성·시행

■ **시행일** : 2014년 7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 권리보호 제도 강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18)

■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 화물운송시장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경제적 약자인 화물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 운송사업자 - 위·수탁차주 간 계약 시 운송업체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법적으로 차량이 운송업체 소유), 실소유주 동의 없는 차량 매매 또는 차주의 귀책사유 없는 저장권 설정으로 차주피해 다수 발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차주 보호를 위해 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비용 전가 금지**, 위탁차량에 대한 **매매 및 압류 금지**,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화물차주 보호제도 강화로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공정한 관계설정**을 유도하여 **운송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항목

■ 추진배경 :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 실 소유자인 위수탁차주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① 운송사업 양도·양수 비용 위·수탁차주에게 전가 금지
- ② 위·수탁차주 동의 없이 현물출자 차량 저장권 설정 금지
- ③ 양도·양수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위·수탁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승계

■ 시행일 : 2014년 12월

직접운송의무제 예외조항 확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18)

■ 대·중소운송업체 형평성 문제 해결 및 개별·지입차주의 물량확보 어려움 해소

- 1차업체(대부분 대기업 자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직접운송 인정 예외조항을 2차 업체(대부분 2차업체 지위)까지 확대하여 대·중소운송업체간 형평성 문제 해결
- 화주와 계약한 1차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타 운송사 소속 위·수탁 차량(개정안에서는 1대 사업자까지 확대) 및 우수화물정보망 이용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 직접운송 예외조항 적용대상 확대로 개별·지입차주들이 편도운송 후 방문지역 2차 업체로부터 회차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공차 회차에 따른 수입 감소 우려 불식
-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취지인 다단계 근절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중소운송업체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계약 체결 차주에게 위탁 허용으로 영세 운송사업자 생계 문제 해소 기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항목

■ 추진배경 : 직접운송의무제 예외조항 확대

■ 주요내용

- ① 2차 운송업체가 1년 이상 장기계약 차량(위수탁차주, 1대 사업자) 및 우수화물정보망 이용 화물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 시행일 : 2014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044-201-3981

■ 6월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 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철도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 타고 이동하였어야 하나
- 신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노선이 연결되어 인천국제공항까지 KTX를 타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은 1일 20회(상 10회, 하 10회) 운행하게 되며, 공항이용객의 편리한 이동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에도 KTX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인천지역 KTX 정차역 : 인천국제공항역, 검암역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인천국제공항 KTX 개통

●● 인천공항 KTX 개통

■ 추진배경 :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KTX 운행 개시

■ 주요내용

- ① 인천공항까지 KTX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결선 신설 등 시설개량공사를 완료하고, 2014. 6. 30.(월)부터 인천공항 KTX 개통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 총사업비 : 3,149억원
- 사업기간 : 2011~2014
- 사업내용 : 경의선과 공항철도간 수색직결선 2.2km 신설 및 정거장(검암, 인천공항), 시스템 등 시설개량

- ②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환승없이 지방까지 한번에 이동 가능

■ 시행일 : 2014년 6월 30일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형) 구조변경 허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2)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 푸드트럭은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등록이 가능,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구조변경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내용

- 추진배경 :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불가능함에 따라 규제장관회의시('14.3.20) 현장건의

■ 주요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요건 완화 : 바닥면적 최소 2㎡이상(특수 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 → 바닥면적 최소 2㎡이상(특수 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 이상 또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0.5㎡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

-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044-201-4208)

■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 이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합니다.

*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표시하고,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의 세부항목인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합니다.

■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광고시 기본운임만,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등을 합산하거나 별도로 알려 줌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여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으나,

- 이번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하여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실제 금액을 **총액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항공법

● ●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광고 또는 안내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권리를 한층 강화

■ 주요내용

- ①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시 “항공운임 등 총액”을 명시(“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공한 것으로 가름)
- ②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표시하고,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 명시

■ 시행일 : 2014년 7월 15일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 044-201-4257)

- 항공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화로 개선**하도록 항공법상의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항공법 개정 공포('14.5.28) 및 시행('14.11.29)

- 항공사가 항공법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상향**(최대 50억 → 100억)하고,
-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정기·수시점검 시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뿐만 아니라 **노선도 운항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항공기 운항정지 → (개정)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정지

- 앞으로, 정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되,
-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점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항공사 CEO와의 간담회 및 안전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항공법

●●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 추진배경 : 아시아나 사고('13.7.7) 등을 계기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 주요내용

- ①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 상향(최대 50억 → 100억)
- ②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처분근거 마련

-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항공기사용사업분야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 044-201-4257)

- 주로 헬기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산불진화, 건설자재 운반 등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항공법 개정 공포('14.5.28) 및 시행('14.11.29)

-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 운항증명 : 사업 개시前 운항·정비관리지원체계 및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운영체계 등 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를 종합 검증하여, 적합한 경우 **안전면허를 발부**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속 감독하는 제도

- **조종사에 대해서는 운항자격심사***를 **의무화**하여 조종사의 기량 및 지식에 관하여 정부의 심사를 통한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운항자격심사 : 항공기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지식 및 조종기술 등을 구술·필기·실기심사를 통해 사전 검증

-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적용과 소속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를 통해 항공기사용사업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항공법

● ● 항공기사용사업분야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적용
- ② 조종사에 대해서는 운항자격심사 의무화

-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전년도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였으나,
- 2014년말부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여 부담금 납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2014년 하반기에 부담금 요율을 현행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5로 인하하고, 먹는 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공지사항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014년도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개요

■ **추진배경** : 부담금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초기 단계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현행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5*로 인하

* 조세연구원 검토 중

■ **시행일** : 2014년 12월(예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2)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식 피해를 우선 복구하여 연안침식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관리구역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구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의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8월 제도시행에 따라 침식심각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지정 개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해양수산뉴스 > 보도자료 > 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 **신설된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내용**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해안 난개발에 따라 심화되는 연안침식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구역 지정)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구역
- ② (지정 해제) 침식피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지정해제 및 변경
- ③ (행위 제한) 관리구역에서는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시 일시적 출입제한
- ④ (우선 정비) 관리구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확보

■ **시행일** : 2014년 8월 13일(2013.8.13, 연안관리법 개정)

친환경 천일염인증 등 고품질 국산천일염에 대한 인증제 시행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044-200-5449)

■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천일염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천일염은 생산된 환경 등과 상관없이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맛, 이물 등 식용소금 규격)’만을 받아 유통·판매하였습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천일염인증제가 시행되어 소비자는 친환경천일염 등 다양한 고품질의 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인증표시 ◆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제

- 추진배경 : 다양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유통
- 천일염인증제(3종)
 - 바닷물, 갯벌, 생산 시설 기구 및 자재, 염전주변환경, 생산관리항목에 따라 인증구분
 - ① 우수천일염인증
 - ② 천일염생산방식인증
 - ③ 친환경천일염인증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홍합, 다시마)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71)

■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등 16개의 품목에 대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중 **홍합, 다시마를 보험상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매년 3개 품목을 보험상품으로 개발**하여 2017년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7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 양식보험 대상품목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기존상품 개선

■ 추진배경 : 양식보험 가입 제고 및 국가적 재해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대상품목 확대 : 홍합, 다시마 (16개→18개)

※ 현행품목(16개)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멍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 시행일

① 홍합양식보험 시범사업 실시 : 2014년 7월

② 다시마양식보험 시범사업 실시 : 2014년 10월



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 측정제도 폐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22)

■ 어선의 준공전에 총톤수의 부분측정 제도는 규모가 작고, 건조기간이 짧은 어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낮으므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십만톤 이상 대형 일반선에서 일부 준용되고 있는 총톤수의 부분측정 제도로써, 현장에서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문화 규정 이었습니다.
 - 2015년부터 건조중인 어선에 대해 준공전에 시행할 수 있는 총톤수의 부분측정 관련 규정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 (참고) 현재 관계부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 관계부처 의견수렴('14.6월말), 입법예고(7~8월), 규제심사(9월)
법제처 제출(10월), 공포(12월말), 시행('15.1월 예정)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9)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가 '14. 8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면허 기간 조정, 어장환경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패류, 해조류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평가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연안 어장은 장기간의 이용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상태이나,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 어장관리법 제11조의2 어장환경평가

●● 어장환경 평가제도

■ 추진배경 : 장기간 어장 이용으로 어장환경이 오염되어 어장생산성 회복을 위한 어장관리 체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① 평가대상 : 어류 양식 어장
※ 패류, 해조류는 단계적으로 확대
- ② 평가항목 : 퇴적물 유기물(TOC), 저서생물(BHI)
- ③ 평가등급 : I 등급(면허연장), II(어장환경개선 권고), III등급(5년간 면허 연장, 어장환경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이동), IV(4년 범위에서 면허 연장, 어장환경개선 및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이동)

■ 시행일 : 2014년 8월 14일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8)

■ 패류 등 생산해역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만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2014.7.31일부터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통영·거제·고성군 소재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88개소에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이용되고 있는데, 인근 해역의 수질·패류 위생조사 결과를 보면, 위생상태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화장실 설치 비용은 기존 설치 비용을 감안한 경우 약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또한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국민 공중보건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화장실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패류 등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분변의 해양 투기 차단

■ 주요내용

- ① 지정해역 인근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 의무화 하는 규정을 일반해역으로 확대(지정해역 주변 양식장→모든 해역)
- ② 화장실 관리에 관한 기록 유지

■ 시행일 : 2014년 7월 31일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3)

■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여 하역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는 화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하역업체의 자율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99년부터 신고제로 운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항만하역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하역시장의 질서가 저해되고, 하역요금도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항 평균하역료 추이 : 10만원('98) → 8만원대('04) → 4만원대('12)

- 이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도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다른 품목의 항만 하역요금과 같이 인가제로 환원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컨테이너 인가요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조항 및 과태료 징수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인가제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를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하역시장 안정화 도모

■ 주요내용

- ① 컨테이너 하역요금 체계 변경(신고제→인가제)
- ② 컨테이너 인가요금 관련 검사 근거 신설
- ③ 허위보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시행일 : 2014년 9월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5)

■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선정제도가 개선되어 물류업과 제조업이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위해 제조업 입주 신청 자격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요구조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0% 및 40% 수준으로 각각 **완화**하고,
 - 평가 항목별 배점 중 **화물창출** 배점은 낮아지고, **고용계획·투자계획** 배점은 **높아** 지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가점**이 신설되어,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 입주기업 선정 평가항목별 배점 변동 내역 ◆

구분	사업 능력	사업 운영 계획		투자·자금 계획	건설 계획	가점(5점)
		사업계획	화물유치			
현행	15점	20점 (고용계획 5점)	40점	20점	5점	· 외투기업 · 화물창출 2배 제조업 · 우수물류창고업자 · 우수운송사업자
개정	10점 (△5)	25점 (고용계획 10점(+5))	35점 (△5)	25점 (+5)	5점	· 외투기업 · 화물창출 제조업 · 우수물류창고업자 · 국내환류 해외진출기업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고시) 참조

●● 2014년도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 추진배경 :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입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자격 기준 완화(매출액 대비 수출액 50%이상→중소·중견 기업 30%·40%이상)
- ②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상 입주기업 선정평가 배점 조정
(현행) 화물창출 중점평가(물류업 우대) → (개선) 고용창출 평가비중 확대 등

■ 시행일 : 2014년 7월중(개정고시안 행정예고중)



도서민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4)

- '14.7.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 지원뿐만 아니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행합니다.
 - 운임지원 대상 차량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합니다.
 - 도서민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여객 운임에 대해서는 최고 7,000원만 부담토록 하고 있었으나,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도서민들의 차량보유가 불편화되고 육지 왕래 시 차량이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 금번 제도 시행으로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 7월부터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구분	내용
지원 범위 및 요건	<p>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도서민 지분 100%인 비영업용 국산 차량으로 차량등록 즉시 지원</p> <p>* 가족 등 도서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운임지원 적용</p>
지원차량	<p>-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p> <p>* 도서민 차량승선권 1인1표 구매원칙</p>
발권 제한	<p>도서민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차량번호에 따라 중복발권 및 2회발권 제한</p>
<p>1) 도서민이 도서민 차량 이용</p> <p>2) 도서민이 일반인 차량 이용</p> <p>3) 일반인이 도서민 차량 이용</p>	<p>1) 여객운임, 차량운임 모두 지원</p> <p>2) 여객운임 지원, 차량운임 지원불가</p> <p>3) 여객운임, 차량운임 모두 지원불가</p> <p>* 도서민이 운전하는 도서민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p>
<p>도서민 복수차량 등록가능 여부</p> <p>1) 복수차량 동일항차 이용</p> <p>2) 복수차량 다른항차 이용</p>	<p>1) 제3조의2(차량운임지원) 3항에 의거 1대만 차량운임 지원</p> <p>2) 차량운임 지원</p>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기관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5)

- 2014.9.25부터 선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537호)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에서 선박 취득 시 영사 이외에 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선박 취득 시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외국의 영사관에 가지 않고 국내 지방 해양항만청에서도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처 확대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① 외국에서 선박 취득 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신청 허용
 - ※ (현행) 취득지 관할 영사 → (개정안) 취득지 관할 영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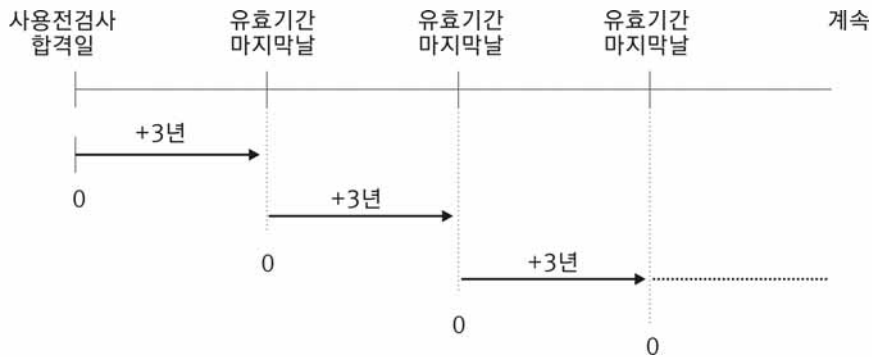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기간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 (☎ 044-200-5876)

■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기간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기간을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 45일간씩 90 일간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정기검사기간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 이내 검사 → (개정)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후 45일씩 총 90일간 으로 확대



유효기간 기산일 적용기준 도표

●● 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기간 확대

- 추진배경 : 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기간 90일로 확대
- 주요내용
 - ① 정기검사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45일씩 총90일간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년 11월 21일

항만재개발 사업 등에 민간투자 유치 확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044-200-5921)

- 항만재개발 사업 참여기회가 넓어지고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항만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원형지를 사업구역으로 공급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환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수자원공사, 철도공사)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사업구역 일부를 자연친화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및 개발절차를 마련하고,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그밖에,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국가 관리항 및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인천항·군산항·울산항의 수상구역 및 항명(가거항리항→가거항리항, 갈두항→땅끝항)을 변경하였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항만법 일부개정안이 공포('14.3.24)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의 세부규정 마련 및 현행 제도상 일부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①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시행자 확대 및 사업방식과 관련된 대행, 선수금, 원형지, 환지 등에 관한 절차·방법 등
- ② 화물제조시설 입지요건 완화, 지방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변경 및 항만의 명칭·위치·구역 변경 등

■ **시행일** : 2014년 9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 가능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 항만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항만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시 추정사업비의 10%이내에 대해서만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 조건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가 최종 결정되므로 추정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추정사업비의 10%이상 변경시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장기소요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 2014년 하반기 부터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정사업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협의 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기간 : 약3개월

(변경)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기간 : 약1개월

0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4)

■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인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듭니다.
- 앞으로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추진배경 :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

■ 주요내용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 축소 (20~100% → 15~50%)

■ 시행일 : 2014년 8월 1일(규제심사 중)*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 중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044-202-2486, 2489)

■ 2014년 6월 19일부터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받게 됩니다.

- 약국에서는 **구두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 · 영수증 · 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 복약지도서의 경우, **약사는 문자 · 숫자 ·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는 약사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제처 심사중('14.6월중 공포 예정)

-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으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의약품 조제시 복약지도 강화

■ 추진배경 :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도모

■ 주요내용

- ① 의약품 조제시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로 복약지도의 방식 구체화
- ②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4년 6월 19일(하위법령 법제처 심사중)

※ 시행령(과태료 금액), 시행규칙(복약지도서의 양식) 일부개정안 '14.6월중 공포 예정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9/2554)

- 2014년 6월부터 모든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완비하여 주소지(구급차 사용본거지)의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 미부착 운용 시 자동차 말소 요청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가능

- 아울러, 구급차 소득 기준 명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항목 세분화, 구급차 운용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지도·점검 의무 부여 등 구급차 세부관리 기준 강화로 이송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처치료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6월 5일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 개정된 법령 시행

●● 개정된 구급차 관련 제도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 강화를 위한 구급차 관련 조항 개정

■ 주요내용

- ① 구급차 신고제 도입(미신고시 과태료 200백만원)
- ② 이송처치료 50% 인상
- ③ 민간이송업 인력기준 현실화(최소 응급구조사12명→8명, 운전자12명→8명)
- ④ 투명한 이송료 지급 위한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 장착 의무화
- ⑤ 소득기준 마련 등(구급차 주 1회이상, 의료장비 사용 후 항시)

- 시행일 : 2014년 6월(기존 구급차 정비 기간 : ~'14.9월)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60)

- **(재난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 119상황실과 실시간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면서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 재난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 **추진배경**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다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재난의료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설치운영) 24시간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및 운영
 - (인력배치)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배치
 - (주요역할) 재난시 실시간 병상 확보, 환자 분산배치, 현장 의료진 출동명령, 평상시 병상, 구급차, 헬기 등 응급의료자원 현황 관리 및 응급환자 전원 조정 등
- **시행일** : 2014년 6월부터 시범운영(하반기 설치)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1)

■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접종** 되고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 (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검색

- 2014년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고, **소아 폐렴구균**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 예방접종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국정과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 실천 사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

- ▲ BCG(파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 DTaP - 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생백신)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소아 폐렴구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1)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2014년 8월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됩니다.

-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자식집 등 타 지역에 머무는 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 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 해진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8)

■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 지원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철재료(PFM)시술 받은 경우이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행위는 1,013천원(의원급 기준('14년)), 식립치료재료는 13만원~27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72천원~642천원이 됩니다.
- 또한,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만 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 2014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 시행일 : 2014년 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4)

■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됩니다.

- 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 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 (예상 금액 기준이며,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2014년도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

■ 추진배경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환자 입원료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모든 병원의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요양병원 제외)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 기본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제외
- 모든 병원은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을 50%이상 확보 의무

■ 시행일 : 2014년 9월 (예정)

※ 현재 동 내용의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6.10~7.19) 진행 중으로,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7)

■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 있어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를 2014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 부모가 Web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직접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영역을 기존 4개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평가도구 응답법도 ‘예·아니오’ 단순응답에서 4가지로 세분화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금번 개선으로 양육자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발달평가 정보가 제공되고 검진 의사는 보다 빠르고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 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 주요내용 >

- ▲ 우리나라 문화 및 언어 환경에 적합하고 쉬운언어로 문항 구성
- ▲ 세분화된 4점 척도 응답법을 적용하여 결과의 정확성 향상
- ▲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검사하는 질문 추가 구성
- ▲ 부모작성형으로 시간 단축
- ▲ 웹(Web) 구현(시스템 구축 예정)으로 수요자 접근성 향상 및 시간 단축
- ▲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 월령주기(4~71개월) 모두 포함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7)

■ 국가건강검진 후 발급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부터 개선할 계획입니다.

-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검진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2차 검진항목과 추가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비만·혈압 등 5개 항목을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개인별 건강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 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3077)

■ 2014년 7월부터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II**’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I,II) 사업 개요(안) ◆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안)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3인가구 기준)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계획

■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 주요내용

-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지원기간)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1 매칭

■ 시행일 : 2014년 7월(7월 1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 ●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개요

■ 추진배경 : IT기술과 오프라인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24시간·365일 응급 구조·구급체계 마련

■ 주요내용

- ① 화재 등 응급사태 자동감지장치 설치
- ② 24시간·365일 u-Care시스템 구축
- ③ 안전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 '장애인 응급알림e' 확대 시행일 : 2014년 7월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2014.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 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 ②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 시행(예정)일 : 2014년 7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6)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14년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 시설·장소별 기준규모(안)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상 시설·장소별 기준규모(안)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 지침 주요 내용
 - 실종아동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일련의 조치사항 규정

■ 시행일 : 2014년 7월 29일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57 / 3492)

■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현 등급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A	
	요양인정점수	95	75	51	45
등급체계 개편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A
	요양인정점수	95	75	51	45

-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신설

■ 주요내용

- 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으로 제출
- ②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장기요양 3등급을 2개의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③ 치매가족휴가제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 : 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6일 단기보호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자 중 치매환자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외, 추가로 단기보호서비스(연간 6일)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B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 치매가족휴가제(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는 7월 25일 시행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 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14년도 노인일자리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일’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기초연금 미수급(상위 30%) 노인 대상 재능활용형 일자리 신설(3만개)

■ 시행일 : 2014년 9월(예정)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 044-202-3622)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노인빈곤율 완화 및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 주요내용
 -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 소득인정액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7월 25일 첫 지급)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한층 강화로 수요자 안심하고 참여 가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2)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14.1.21 공포)으로 '14.7.22부터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종이 의무화**됩니다.
- 작년 11월 부터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해 **개인** 또는 **임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 앞으로는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추가 하였습니다.
- 특히,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실시하고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 현행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 대상자인 **개인 및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참가규모가 적거나 위험 정도가 낮은 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련활동 실시가 제한되며,
 -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과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과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특히, 숙박과 여행청소년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시설의 범위 내에서만 수련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의 맞춤형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02-2100-6302)

- 고위험군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2013년부터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예정) 개원하여 연중 운영됩니다.
- 이용대상은 중 ·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으로, 학교,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협력의료기관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동의와 심리검사, 진단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입소를 하게 됩니다.
- 치유학교에서는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대안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구성된 1주, 2주, 3주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교절차, 입교비용 등 상설인터넷치유학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7월 중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운영

- 추진배경 :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설 치유 서비스 제공 필요
- 운영내용
 - 입교대상 :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 고등학생 청소년
 - 서비스 내용 : 개인, 집단상담, 수련활동, 대안활동 서비스 등 제공
 - 입교비용 및 입교방법 : 2014년 7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시행(개원)일 : 2014년 7월(예정)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컴퓨터로만 열람이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용 앱은 ‘성범죄자 알림e’ 웹과 연동된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되었으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마켓에서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지도 또는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현 위치의 읍·면·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도 재범방지 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용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그리고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안내 등의 정보도 앱을 통해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신상정보 등에 대해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보호 효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 ·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실효성 강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42)

■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성교육 및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교육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뉴스 · 소식 > 보도자료 > ‘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성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 연장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실효성 강화

■ 추진배경 :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등 실효성 확보를 통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도모

■ 주요내용

- 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기관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해 매년 점검 실시
-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점검 결과 부실 기관 등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점검 결과의 언론 공표(의무), 기관 평가에의 반영 요구 가능

■ 시행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4년 7월 22일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법제처 심사 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4년 9월 28일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입법예고 중)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3)

■ 국가기관 등(정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치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 2014년 7월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학습권·근로권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예방교육 운영 방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국가기관 등은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 추진배경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 의무 강화

■ 주요내용

- ①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 구체화(공표→홈페이지 및 언론기관, 기관평가에 반영 요구)
- ② 성희롱 사건 은폐 및 추가피해 확인(관련자 징계요청)
- ③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 및 기준 명시, 실시 방법 구체화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법무부 보호법제과 (☎ 02-2110-3330)

- 보호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기부금품을 공정·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기부자가 보호기관에 기부금품을 전달하려고 해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보호기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어렵게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14. 1.)하여, '14. 7.부터는 보호관찰소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자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접수한 기부금품은 보호관찰 대상자, 피치료감호자, 소년원생 등을 위한 장학금, 가족원 호금, 직업훈련 등에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 추진배경 : 보호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미비로 보관·전달 등 관리에 어려움

■ 주요내용

- ① 보호기관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② 보호기관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 시행일 : 2014년 7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139)

■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아동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특례법에서는 현장출동시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등의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다양하게 정하여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고,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경미한 사건에서는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경미한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특례법에서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 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친권 제한·정지 또는 상담 등 **보호처분**을 하거나, **치료·상담·수강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여 **원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등에게만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이 지원되었습니다.
-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어, 아동이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의 수사·재판 절차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피해아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 **사건관리회의**가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6 고용노동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8)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2014년 9월 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이로써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축소

■ 추진배경 : 고용 · 산재보험료의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고용 ·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 (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
 - ※ 현행 : 체납액의 1.2%, 1개월 경과시 마다 1.2% 추가 징수 <한도: 36개월(43.2%)>
변경 : 체납액의 3%,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 <한도: 9%>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8)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용 · 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2014년 9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 · 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 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입니다.
 - 이로써 사업주의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 편의 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 추진배경 : 납부 편의 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고용 · 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으나 이를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

※ 납부한도 및 납부대행 수수료를 등에 대한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3)

■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14.7.1.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 추진배경 : 다태아 산모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를 통해 회복 등을 지원

■ 주요내용

- ①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90일 → 120일, 출산후 45일 → 60일)
-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30일 →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 120일)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3)

■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 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임신 초기·후기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임신 초기의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 주요내용

-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6시간으로 단축 근무 가능
- ②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 불가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16.3.25시행)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29)

■ 18세 미만자(연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시킬 수 있었으나
-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인가는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인가 제한

■ 추진배경 :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주요내용

-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 24시까지로 제한
 -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 허용

■ 시행일 : 2014년 8월(잠정)

우리스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44-202-7560)

-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스주에 대하여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 회사가 우리스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스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강제로 할당하거나 취득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우리스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내용

- 추진배경 : 우리스주 우선 배정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스주 취득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적용

■ 주요내용

- ①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스주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금지
- ②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계급 등 기준에 따라 우리스주를 할당하는 행위 금지
- ③ 우리스주를 취득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금지
- ④ 우리스주 취득강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4년 7월 29일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44-202-7560)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 현재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80%로 높여 중소기업의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 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사용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의 사용한도 확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 해소

■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80%로 확대

■ 시행일 : 2014년 7월 29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44-202-7561)

- 「소득임금감소 생계비 용자제도」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도 긴급한 자금 필요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문제로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근로자

- 용자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 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용자 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1년 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용자’의 경우,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노부모 요양비 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1인당 300만원에서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내용

■ 추진배경 :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 주요내용

- ① (소액임금감소 생계비)개인 사정 및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융자 조건을 200만원 한도,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 연리 3%로 함
- ② (노부모 요양비)노부모 요양비 융자 한도를 융자 신청자 1인당 총 300만원에서 노부모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총한도액 1,000만원 내에서 융자
- ③ (자녀학자금 융자) 고등학교 학자금 융자시 취약계층(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1자녀인 경우에도 융자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14년 5월 23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에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기간제·단시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추진배경 : 청소년 등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주요내용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이전에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4년 8월(잠정,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중)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추진배경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초과근로 남용 방지

■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
-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시행일 : 2014년 9월 19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하였으나,
 -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고의·반복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명령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년 9월 19일

07 보훈 · 국방 · 병무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 044-202-5737)

■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창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만 지급하던 전직지원금(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을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최대 150만원)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열린마당 > 보훈처소식 > 전직지원금 지급

●●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창업 촉진

■ 주요내용

- ①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월 25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금품수수·공금횡령자 징계시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국방부 법무과 (☎ 02-748-6818)

■ 군인이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하거나 공금을 횡령(橫領)·유용(流用)한 경우에 해당 징계 외에 금품과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군인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이외에 다른 부가금이 없었으나,
- 금번 군인사법 개정으로, 금품·향응 수수(授受)와 공금을 횡령(橫領)·유용(流用)한 군인에게 징계와는 별도로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국방부관계법령 > 군인사법(제56조의2)

●●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군인에게 징계부가금 부과

■ 추진배경 : 공직자에 대한 청렴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① 금품·향응 수수(授受)와 공금을 횡령(橫領)·유용(流用)한 군인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시행일 : 2014년 12월(잠정, 법제처 공포 대기)

※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 군무원의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계류 중임.

군인 및 군무원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

■ 영관급 장교로 진급하거나 4급이상 군무원으로 임용·승진할 경우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임용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으나, 국방부 소속 대상자의 경우는 장관급 이상의 장교로 진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 이에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상자 중 영관급 장교와 4급 이상 군무원으로 진급·승진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과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향후 소령이상 장교나 4급 이상 군무원으로 정규진급·승진할 경우는 물론, 명예진급·승진하는 경우에도 대통령 임명장이 수여되며, 각급 부대(서)장 주관 진급·승진 신고 시 위임수여될 계획입니다.
- 이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진급·승진자부터 적용·시행됩니다.

●●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의 진급·승진시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새가 날인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주요내용

- ① 수여대상 : 소령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진급·승진자
- ② 수여시기 : 진급·승진 신고 시
※ 각급 부대(서)장 주관 진급·승진 신고 시 위임수여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부터(군인사법시행령 공포 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 군무원의 직종 통합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 우리나라의 290만 예비군에 대한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의 직종이 일반직으로 통합됩니다.

- 지금까지는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이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제 군무원 등으로 구분되어 계약제 군무원은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등 같은 업무를 함에도 인사기준과 운용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인사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통합을 기하기 위해 2014년 8월 20일부터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합니다.
- 이를 통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들은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7급에서 4급까지의 다단계화된 직급에서 승진, 교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비전력 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경우 정년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정년을 2015년까지 57세, 2017년까지 58세, 2019년까지 59세, 2020년까지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군무원인사법 > 제2조제2항 군무원의 구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 직종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시행

■ 추진배경 : 공직사회의 통합과 예비전력관리업무 담당자의 복무 안정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종 단일화(일반직·별정직·계약직 → 일반직)
- ② 군무원의 구분에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직렬 신설
(기술·연구·행정 → 기술·연구·행정·예비전력관리)
- ③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대한 특례(경과조치)
 - ※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 시행일 : 2014년 8월 20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2014년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기존 보상신청기한이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종료되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이 보상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금번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지급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입니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14. 5. 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

■ 추진배경 :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신청기한 :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 ② 신청대상 :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

■ 시행일 : 2014년 5월 9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02-2079-6448)

■ 급식, 피복류, 일반장비류 등 **일반군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선정된 일반군수품 생산기업의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생산자금**, 군수품 성능개량 비용 등 **R&D 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0.2%p)이 제공됩니다.

-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방분야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 추진배경 : 일반군수품 생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 주요내용

- ① 일반군수품 생산 중소기업의 R&D 자금,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자금대출 지원
- ②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0.2%p)

■ 시행일 : 2014년 6월

조달예비판단 정보 조기 공개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 02-2079-4173)

■ 방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입찰 및 생산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공개합니다.

- 지금까지는 조달계획이 확정된 후 조달대상 품목, 수량 등을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음년도 국방조달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11월부터 조달예비판단 정보를 조기 공개**하여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품목, 재고번호, 수량, 예산, 납기 등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 업체가 **국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조달예비 판단 정보 조기 공개로 조달가능성, 조달원 유무, 생산가능 기간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용이해짐에 따라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과 함께 **군수품 적기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방위사업관리규정

●● 조달예비판단 정보 조기 공개

■ 추진배경 : 실효성 있는 조달계획수립 및 다양한 조달원 확충을 통한 군수품 적기 조달

■ 주요내용

- ① 다음해 군수품 조달계획정보 조기공개(전년도 11월)
- ②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관련업체와 쌍방향 의사소통

■ 시행일 : 2014년 11월(잠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시)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 02-2079-4173)

■ 입찰담합을 방지하여 방위사업 참여 업체들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방위사업관리규정」상의 담합의혹 처리기준을 활용하였으나,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입찰담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침에는 ‘**담합의혹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23개의 기준과 함께 산업합리화, 기술 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허용이 되는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14개의 기준이 포함됩니다.

- 또한, 홈페이지와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담합 판단기준을 공표하고, 방산업체 및 조달원 대상 입찰담합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담합의혹 행위가 식별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공정한 입찰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국방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입찰담합 근절을 통한 방위사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주요내용

- ① 담합유형에 따른 ‘담합의혹 행위’ 23개, ‘허용되는 행위’ 14개 판단기준 제시
- ② 담합의혹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 ③ 담합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 시행일 : 2014년 6월

국방분야 참여 업체의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방법 개선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 02-2079-4113)

■ 국방분야 참여 업체의 계약불이행 및 품질하자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국방조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검사설비 수량, 기술자격 인력의 수, 일일·월간 생산능력 등을 확인기준서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납품실적은 없으나 생산·정비능력 확인에 합격한 업체의 경우,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와 동일하게 생산·정비능력 면제 기간을 합격 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업체의 실제 생산능력을 확인함에 따라 군수품의 적기 조달이 용이 해짐과 동시에,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 사이버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 국방분야 참여 업체의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군수품 계약불이행 및 품질하자 예방활동 강화

■ 주요내용

- 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기준서에 생산·검사설비 수량, 기술자격 인력의 수, 일일/월간 생산능력 등 포함
- ② 납품실적은 없으나 생산·정비능력 확인에 합격한 업체에 대한 생산·정비능력 면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시행일 : 2014년 4월

성숙된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 02-2079-6326)

- 성숙된 민간분야의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 체계인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기술의 조기 전력화 및 군사적 실용성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 ACT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기술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 과제선정 이후 선행조치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4년에서 3년(3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적정비용 산정을 위해 사업추진 이전에 비용분석을 수행합니다.
- 또한,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추후 활용계획(소요량, 소요시기 등)을 포함하여 검토함으로써 개발완료 이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ACTD 사업 참여가 촉진되어 많은 민간분야의 우수 기술이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 정책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

●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 시행

- 추진배경 : 민간분야 성숙된 기술을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인 신개념기술시범사업으로 입증하고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 모색
- 주요내용
 - ① 조기 전력화를 위한 사업기간 단축 및 적정비용 산정을 위한 사업추진 이전 비용분석 실시
 - ② 기존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 시행일 : 2014년 6월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규모가 크고, 예산 사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다수의 복무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예산 편성이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이 개발되었으나, 아직도 예산 편성 또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복무기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근거를 2014년 5월 「병역법」에 명문화하여 복무기관의 보험 가입을 활성화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 치료 및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부담을 위한 예산편성 등이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구
-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사회복무요원 순직 또는 공상자에 대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4년 5월 9일

복무관리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 부과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3)

- 자연계대학원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 복무관리 부실이 우려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는 자연계대학원의 장에 대하여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및 종사의무 위반 등 복무관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복무관리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는 자연계대학원의 복무관리 책임성 제고

■ 주요내용

- 복무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의 장에게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내용
 -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시행일 : 공포(2014. 5. 28.)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70)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 1991년에 마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규정은 훈련소집에 불응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년 이상 지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처벌수준이 낮아 기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발생을 줄이고자 벌칙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피자 발생 억제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양형을 상향조정
- (종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조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시행일 : 2014년 8월 10일

08 교육 · 문화 · 통신 · R&D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7)

■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실시됩니다.

● 출제 범위는 ‘영어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나 듣기평가 문항이 5개 감소한 17문항 출제됩니다.

- 또한 학생 · 학부모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어려운 문항 유형(빈칸 추론 등)출제를 줄이는 등 쉽게 출제할 계획입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i를 통해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학습방법 안내 자료집』과 『2015학년도 수능 영어 학습 안내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홈페이지 > 대학수학능력시험 > 자료마당 >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학습방법 안내 및 Q&A

☞ (참고) 2015학년도 수능 영어 학습 안내 강의: www.ebsi.co.kr > 고3 · N수 > 2015 수능 영어 이렇게 나온다.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통합형 실시

■ 추진배경 : 학생 · 학부모의 수험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대입 지원

■ 주요내용

- ①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 실시
- ② 어려운 문항 유형 출제 축소 등 쉽게 출제

■ 시행일 : 2014년 11월 13일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교육부 대학장학과 (☎ 044-203-6271)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되어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줄어듭니다.

- '전환대출' 대상은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입니다.

* 소득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는 학자금 상환의무 유예

-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5.13까지)으로 운용됩니다.

※ 세부적인 신청절차, 자격, 방법 등은 6월말에 별도로 홍보·공지 예정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62만명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시행

- 추진배경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4.5.14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전환대출 시행

■ 주요내용

- 대상 :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신청일 :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들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보장
- 주요내용
 - ① (국가·지자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자유이용
 - ※ (제외)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의 자유이용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 제도 마련·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 044-203-2557)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년 7월)을 계기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풀뿌리 문화가 정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문화도시 지정·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문화브랜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44-203-2522)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제정되어,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국가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구체적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번 법률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위원회 운영,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203-2837)

■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 다르게 호텔 등급표지를 부착하는 등 **허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 또, 각 호텔별 등급, 등급결정일 등 **등급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호텔 등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모든 호텔은 3년마다 등급 받아야
(’14.02.20)

●●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 추진배경 :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신뢰성 제고를 통한 관광숙박 인프라 질적개선 도모

■ 주요내용

- ①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화
- ② 등급 결정된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금지
- ③ 등급결정정보의 공표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4년 9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9)

■ 낡고, 불편하고, 위험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때는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14년 5월 14일자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시행되어, ▲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생활체육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자 건강 및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는 종전 지원비율(30%)을 상회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체육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주요내용

- 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10년 이상 경과한 전문·생활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 ②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율 일부 상향(총 재원의 30% 지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는 30% 이상 지원 가능)

■ 시행일 : 2014년 5월 14일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 044-203-3245/3249)

■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사재기를 한 자에게는 행정벌인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으나, 2014. 7. 29일부터는 형사처벌(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재기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기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게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2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6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사재기 방지대책

■ 추진배경

- 가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사재기는 독자를 기만하고 출판유통시장을 교란하여 출판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고
- 사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재기로 인해 얻은 수익에 비해 과태료가 적어 사재기 관행이 지속됨

■ 주요내용

- ① 간행물 사재기 행위 처벌 강화(과태료 → 벌금, 징역)
- ② 간행물 사재기 행위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시행일 : 2014년 7월 29일

출판문화 융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 044-203-3245/3249)

■ 저자·출판·유통사·소비자 상생과 출판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의 기틀 마련을 위해 개정된 합리적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 11.21일 시행되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는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 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18개월 경과 간행물(구간)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과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되, 소비자의 책 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구간에 한하여 책의 정가를 하향 책정하는 재정가를 실시하며
-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판매가의 9%이내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하여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됩니다.

※ 예) 정가가 10,000원인 책을 가격할인 8% + 간접할인 7%로 구입할 경우 : 800원 할인 + 700원 적립

◆ 현행 및 개정 도서정가제 내용 비교 ◆

구 분	현행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적용 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재정가)
할인범위	정가의 10%(가격할인) + 판매가의 9%(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가격할인+간접할인)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적용 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도정제 적용)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소비자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4)
방통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4)

- 동일한 휴대폰을 같은 날 A판매점에서는 30만원, B판매점에서는 70만원에 구매하는 등의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집니다.
- 지금까지는 동일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판매 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가격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함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한 휴대폰 구매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또한, 소비자가 통신서비스 가입 시 기기만 변경을 한 경우에도 번호이동을 한 경우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 90~100만원대의 고가 프리미엄폰이 아닌 양질의 중저가(30~40만원대)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어 휴대폰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꾸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단말기 가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판매자는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시**하여야 하므로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 매장별 가격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현재는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의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 법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소비자는 **이통사가 유통시키지 않는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해서 서비스에 가입할 유인이 생김으로써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용하던 폰이나 별도로 구입한 폰으로 가입 시 요금할인을 받게 되므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럴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 비용과 통신비용 모두 절감 가능

■ 불필요한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이 없어져 통신비가 저렴해집니다.

- 현재는 판매자가 비공식적인 이면계약을 통해 음성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지 않는 고액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13.2월, 이용자 1,511명 대상)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 대비 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단통법」에서는 이러한 음성적인 이면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요금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소비자가 높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 62요금제에 가입·사용하고 있었다면, 동 법 시행 후에는 적정 소비패턴인 52요금제로 변경함으로써 매월 1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 ‘공짜폰’ 등 허위 광고가 금지되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됩니다.

- 일부 판매점에서는 단말기 구입 시 지원하는 보조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하는 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예시) 출고가 80만원짜리 휴대폰을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하여 서비스에 가입 시 판매자는 보조금 40만원과 24개월 동안 매월 할인되는 요금 40만원(16,500원 x 24개월)을 합쳐 이를 공짜폰이라고 호도하여 판매

- 「단통법」에서는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공짜폰 등)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짜폰이라고 호도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 추진배경 :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 주요내용

- ① 보조금의 차별지급 금지
 -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 ② 보조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단말기별 보조금 공시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 이통사가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금지
- ③ 보조금과 특정요금제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 이용약관과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 금지
- ④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 ⑤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
 -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요금의 혼동되지 않도록 이통사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약정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 02-2110-1981)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등 무선 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14.8.1)

-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되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전자파 등급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어 **전자파 등급을 표시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되었습니다.

- 휴대전화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1개의 등급을 표시하거나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 전자파흡수율 :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 현행 국내 기준은 1.6W/kg 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를 할 수 없음

-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중 1개의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의미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운용 제한 또는 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 도입

● 2014년도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제를 도입·시행(’14.8.1)

■ 주요내용

- ① 휴대전화에 전자파흡수율 값 또는 전자파 등급(1, 2등급 중1) 표시
- ② 기지국 등 전자파 강도 보고 대상 무선국의 전자파 등급(1, 2, 주의, 경고 등급 중1) 표시

■ 시행일 : 2014년 8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 도입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 02-2110-1973)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포함)의 표준 음량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방송사업자마다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서 일정한 음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음량을 송출하였으나,
- 2014년 11월 28일부터 **방송광고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평균 기준(-24 LKFS, 오차범위 $\pm 2\text{dB}$)에 맞추어 제작·송출**됩니다.

※ LKFS : ITU-R 권고 BS.1770- 2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계산한 음량 측정 단위 (L: Loudness, K: K-weighted, FS: relative Full Scale)

- 평균음량 측정은 시작부터 종료까지이며 음성, 배경음악, 음향효과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 도입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제정

■ 추진배경 : 방송 프로그램별 송출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 불편 해소

■ 주요내용

- ① 방송광고를 포함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평균 음량을 규정
- ② 방송음량은 ITU-R의 권고방법에 따라 측정되며,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함

■ 시행일 : 2014년 11월 28일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확산과 (☎ 02-2110-2721)

■ 연구자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다음의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 연구자 단위로 폐쇄적으로 활용되던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오픈 사이언스 랩(Open Science Lab, 개방형 과학 실험실)**’을 통해
 - 연구자는 실험 방법 및 측정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타 연구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과학기술 데이터 목록·생산자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쉽게 검색이 가능한 ‘**사이언스 데이터 맵(Science Data Map)**’을 통해
 - 국가 과학기술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하여 한 눈에 현황을 파악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 **추진배경** : 연구자간 협력을 유도하고 데이터 공동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R&D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오픈 사이언스 랩 : 연구자가 실험 방법 및 측정 데이터 일부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재해석 및 2차 연구를 지원
- ② 사이언스 데이터 맵 : 과학기술 연구데이터 목록, 생산자, 보유기관, 관련 프로젝트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맵

■ **시행일** : 2014년 8월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확산과 (☎ 02-2110-2724)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들만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데, 비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들도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14년 12월부터 재원 구분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또한, 기존 공동활용시스템(ZEUS^{*})이 연구기관별로 운영 중인 공동활용시스템과의 연계되고 포털 형태로 확대·개편되어 다양한 공동활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장비활용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 <http://zeus.nfec.go.kr>)

-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와 적극적인 공개·공유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과다·중복 구매가 억제되어 국가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져 연구자 및 중소기업들의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 활용시스템 확대 개편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 02-2110-2732

■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연구비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했던 **연구비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소액의 회의비 집행시에도 각종 증빙서류(사전 원인행위, 회의록 등)가 요구되었으나, 2014년 8월부터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간단한 증명자료(영수증)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연구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비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제고

■ 주요내용

- ①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지출시 증명자료(영수증)만으로 집행 가능
- ② 연구수행과 관련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 허용

■ 시행일 : 2014년 8월(잠정, 개정 추진 중)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18)

- 정부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既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 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부는 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파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및 유출 우려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 기술지원 >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안내

2014년도 주민등록번호 사용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주민번호 파기에 대한 안내 강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연중)
- (기술 지원) 중소 웹사이트는 전문기관을 통해 DB 내 보유중인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기술 지원(금년 9,000개, 예산 25억원)
- (실태점검) 방문자 수가 많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파기 실태점검을 실시

09 농식품 · 산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역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지역 소재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인 중소기업이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이로 인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보증대상자가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 정부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14년 6월),
 - 보다 많은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제목 > '농림수산업자' 입력 > 검색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보증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동종업계간 보증 지원 형평성 문제 해소

■ 주요내용

- ① 도시지역소재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추가

■ 시행일 : 2014년 6월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5)

■ 농림식품분야의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인증 기술 분야는 6대 대분류 및 18개 중분류 기술이 대상이며,
 - ①농업기술 ②축산·수의기술 ③식품기술 ④임업기술
 - ⑤농림식품기반기술 ⑥농림식품융복합기술
- 신청 및 접수는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 (www.newat.or.kr)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접수된 기술에 대해서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심사), 3차 심사(종합심사) 및 신기술인증 예정공고(30일),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거쳐 인증신기술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신기술인증 획득시 ①인증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게 자금 지원 ②신기술을 보유한 자에게는 기술지도,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③인증된 신기술을 활용·제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등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4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 계획(신청·접수) 공고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

■ **추진배경** : 농림식품분야의 신기술을 조기발굴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 **주요내용**

- ① 신청자격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② 인증 기술분야 : △농업기술 △축산·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복합기술 6개 대분류 기술 및 18개 중분류 기술

■ **시행일** : 신청·접수(6.23~7.8), 신기술 확정공고(11월)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의무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5)

■ 재해시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의 30일 이내 복구의무(불이행시 선급금 반납 의무와 미반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폐지됩니다.

- 그 동안 복구 및 선급금 반납의무 등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폐지('14.6.25)하여
 -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를 도울 예정입니다
- 향후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편 재해예방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 양·배수시설, 방풍·방조망 등 시설·장비 지원 대상 29종을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의무 폐지

■ 추진배경 :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 정의와 타 재난관련 법률의 자연재해 정의 통일 및 복구자금 선지급에 따른 의무 폐지 등 국민 혼란 방지

■ 주요내용

- ① 농업재해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자연재해 정의와 일치
- ② 불가항력적인 재해와 재해 예방시설의 정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대상 규정
- ③ 선급금을 받은 경우의 복구의무 시한, 이를 어겼을 경우의 선급금 반납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 폐지

■ 시행일 : 2014년 6월 25일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4)

■ 말산업육성법에서 정한 말산업특구 신청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말산업 육성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말산업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이어야 하나, 이를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동 시설종류에 **이용시설도 포함하여 그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 **말산업특구 신청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말산업특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말산업 특구의 개념

■ 추진배경 : 말산업 육성 활성화

■ 주요내용

① 특구지정 신청요건 완화(말사육 농가 50가구 이상 → 승마장, 사육농가 등 20개소 이상)

■ 시행일 : 2014년 8월(잠정,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예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4.3.24), 시행(9.25)

-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관련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분야
- 교육기준 : 자격교육 30시간 이상, 보수교육(인증심사원) 6시간 이상/연
- 교육기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IOIA(국제유기인증심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인증심사원은 부정 또는 부실 인증심사 등 **위반행위시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조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 설정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과 교육기준을 정함
-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함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 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7)

■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에 **어업을 추가하여 간척지를 어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으로 국한하였으나,
 - 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간척지의 이용범위를 어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임대대상 자격자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추가되었습니다.

☞ (참고) 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 간척지의 활용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 추진배경 :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에 어업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 주요내용

- ① (현행) 농업적 → (개정) 농어업적
- ② (현행) 농산물·축산물 → (개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 ③ (현행) 농업법인 → (개정) 농어업법인
- ④ 임대대상 자격자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추가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 도매시장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의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도매인간의 거래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는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도매시장과 거래하는 소매점(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의 one-stop 쇼핑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 추진배경 :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도모
-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 시행일 : 2014년 9월

인삼경작 신고기관 시·군 등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 인삼 경작농가의 편의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을 기존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조합에서 **관할 시·군 등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인삼 경작농가가 경작신고를 하려면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조합에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14년 9월부터는 **경작지 관할 시·군 등에도 인삼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인삼 경작농가의 비용·시간 절감 및 경작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삼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합검색 > 인삼산업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2014년도 인삼경작신고기관 시·군 등으로 확대

- 추진배경 : 인삼경작신고기관을 시·군 등으로 확대하여 농가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인삼경작신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인삼조합에서 관할 시·군 등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년 9월(잠정, 시행규칙 개정 중)

단감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6)

■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보험 대상 품목에 ‘단감’이 추가됩니다.

- ‘단감’은 특정 재해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었으나, 제도를 개선하여 종합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보험상품은 11월경 판매 예정이며, 적과(숙아내기) 전 주요재해인 겨울철 동해 피해, 이상고온, 이상저온에 의한 수확량 감소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4년도 품목별 시범 사업 대상지역

- 배(12개 시·군) : 안성, 평택, 남양주, 천안, 아산, 예산, 논산, 나주, 영암, 상주, 진주, 울주
- 단감(3개 시·군) : 창원, 김해, 진주

- 농식품부는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17년까지 매년 1개 품목씩 단계적으로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도입계획 : '13년(배), '14년(단감), '15년(사과), '16년(뽕은감), '17년(감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배·단감 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 ‘단감’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보장범위 확대

■ 주요내용

- ① '14년 도입품목 보험상품 개발(적정 보험요율 산정, 상품인가 등) 및 시범사업
- ② 도입계획 : ('13) 배, ('14) 단감, ('15) 사과, ('16) 뽕은감, ('17) 감귤

■ 시행일 : 2014년 11월(잠정)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62)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08년 12월부터 시행 중

-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됩니다.

-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추진배경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돈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

■ 주요내용

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②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 시행일 : 2014년 12월 예정

발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8)

■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논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40만원/ha)을 지급합니다.

-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밭직불금 지원대상 논 이모작 재배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울무, 감자, 고구마

- '13.10월~'14.6월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 '14.4.4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밭농업직접 지불제사업

● 2014년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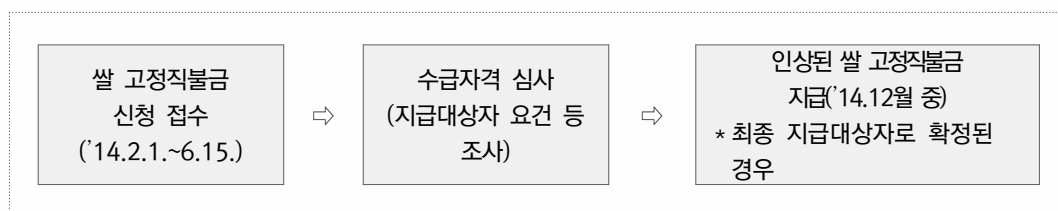
- ①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
('13년 미지급 → '14년 40만원/ha 지급)

■ 시행일 : 2014년 12월(접수 : '14.2.1.~4.4, 지급일 : '14.12월 예정)

2014년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6)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4년 쌀 고정직접지불금을 ha당 평균 10만원 인상하여 지급('14.12월)합니다.
- '13년 대비 ha당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120,060원이 인상된 970,187원이며, 비진흥지역의 경우 47,538원 인상된 727,640원으로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 금액' 고시

2014년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추진배경 :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 주요내용 :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인상
 - ① 농업진흥지역 안 : 970,187원/ha('13년 대비 120,060원 인상)
 - ② 농업진흥지역 밖 : 727,640원/ha('13년 대비 47,538원 인상)
- 시행일 : 2014년 12월(접수 : '14.2.1.~6.15, 지급일 : '14.12월 예정)

산지규제 완화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1)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활용하여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보전산지 내 병원 외 의료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 풍력발전시설단지 편입면적 확대
 - 공장설립 최소 면적 기준 완화
 - 산지의 면적에 관한 기준 완화 등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지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활용하여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주요내용

- 보전산지 내 병원 외 의료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 풍력발전시설단지 편입면적 확대
- 공장설립 최소 면적 기준 완화
- 산지의 면적에 관한 기준 완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채석단지 지정·해제 관한 일부 이양 등

■ 시행일 : 2014년 10월(잠정, 규제심사 중)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을 현행대비 5~25년 완화할 예정입니다.

- 당초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된 벌채 연령 기준을 목재시장 수요를 고려한 적정 벌채 연령으로 완화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산주의 소득 증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소나무(50→40년), 잣나무(60→50년), 낙엽송(40→30년), 참나무류(50→25년) 등

■ 수목의 벌채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벌채 가능량은 약 26.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나무류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표고자목용으로 매각이 가능하여 산주 소득은 최대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수목의 벌채 기준연령 완화

■ 추진배경

- 보호·육성 위주의 산림정책에 따라 시장 여건과 맞지 않게 벌채 연령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산주의 소득 증대 저해 및 임목의 가치 증진 억제

■ 주요내용

- 목재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벌채 연령으로 기준 완화
(당초)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참나무류 50년, 포플러류 15년 등
(변경) 소나무 40년, 잣나무 50년, 낙엽송 30년, 참나무류 24년, 포플러류 3년 등

■ 시행일 : 2014년 9월(잠정, 입법예고 중)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간벌기 이전 대상지의 숲아내기 대상 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목 굴취(캐내기)를 허용하였으나, 벌채 연령에 도달한 입목에 대해서도 수목 굴취(캐내기)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경미한 수목 굴취(캐내기) 행위는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굴취(캐내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대나무 굴취,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에 따라 산주 소득이 증대되고, 수목의 가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산림의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산림 내 수목 굴취(캐내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산주 소득 증대를 저해

■ 주요내용

-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 경미한 굴취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굴취 허용
 - (당초) 간벌기 이전 대상지의 숲아내기 대상 입목에 대해서만 굴취 허용
 - (변경) 간벌기 이전 숲아내기 대상 입목 및 벌채 연령 도달 입목에 대해 굴취 허용
 - (당초) 일부 임의 굴취를 제외한 모든 굴취는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
 - (변경) 경미한 굴취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굴취 가능

■ 시행일 : 2014년 9월(잠정, 입법예고 중)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4)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이 12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13년까지 9개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목재 브리켓, 목재칩)에서 '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개 품목(목질바닥재, 집성재, 성형목탄)에 대해 규격·품질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 향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제도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추진배경

- 소비자가 목재제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목재생산 유통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 주요내용

-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13) 9개 품목 → ('14) 12개 품목

■ 시행일 : 2014년 12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187~8)

■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인건비 등 경비부담을 줄여 경제성을 높이고, 법인설립의 문턱을 낮추어 창업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은 산림경영기술자 3명이상(기술1급 1명, 기술2급 2명) 및 기능인영림단 6명(기능2급 4명, 무자격 2명)으로 최소인원 9명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법인등록이 가능하였으나,

※ (업무범위) 산림사업법인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

※ 벌목작업 및 장비사용 등 실질적인 산림작업은 기능인영림단이 실시

- 2014년 7월부터는 산림경영기술자 3명(기술1급 1명, 기술2급 2명) 및 기능인영림단 4명(기능2급)으로 최소인원 7명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숲가꾸기)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 · 정책 >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도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내용

■ 추진배경 : 산림사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주요내용

- 산림사업법인 자격요건 완화 : 9명 → 7명
 - (당초) 산림경영기술자 3명, 기능인영림단 6명(기능2급 4명, 무자격 2명)
 - (개정) 산림경영기술자 3명, 기능인영림단 4명(기능2급 4명)

■ 시행일 : 2014년 7월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124)

■ 산림교육전문가도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으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당초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또는 산림치유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현행 기준에서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가 활동경력도 인정함으로써 비전공자도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공제한이 없는 숲해설가 등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으로 인정
- 향후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 산림치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치유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여 산림치유활성화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취득 기준 확대
(당초)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분야 학위 취득자 및 산림치유분야 경력자
(변경) 기존 사항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가 활동 경력 추가

■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법제처 심사중)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042-481-8814)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에 따른 혼선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허용시설과 허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집행 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 '14년 하반기부터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 범위 명확화

■ 추진배경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집행에 따른 혼선 방지

■ 주요내용

- ① 현행 :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개정 :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시행일 : 2014년 9월(잠정, 입법예고 중)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 요건 완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1)

■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 선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나, 2014년 8월부터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이 개정되면 임산물 재배경력이 없어도 교육실적, 사업계획 수립 등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면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립가의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15ha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해야 자영독립가로 선정될 수 있었지만, 2014년 8월부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10ha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도 자영독립가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2014년도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 요건 완화 내용

■ 추진배경 :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젊고 유능한 임업후계인력 육성

■ 주요내용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 ①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 폐지
- ② 재배포지 소유요건에 자기명의 외에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③ 재배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교육이수실적, 재배포지,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정함

〈독립가 요건 완화〉

- ① 산림경영면적 : 15ha 이상 → 10ha 이상으로 완화

■ 시행일 : 2014년 8월(잠정,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중)



PIC/S 가입으로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 043-719-2760)

- '14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이 됨에 따라 국내 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수출 증대는 물론 보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는 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비관세 기술장벽인 GMP 기준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입니다.
 - 현재 7월 1일부로 우리나라와 동반 가입한 일본을 비롯해 미국, EU 등 4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제약분야에서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은 경제분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금번 식약처의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으로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동남아시아 의약품 조달시장 등을 포함하여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국제연합(UN) 등 각종 국제기구에 백신, 결핵약 등을 조달하는 사업 참여 시 GMP 실사 면제가 가능해져서 국내 제약업체 진출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이 되는 7월 1일부터 국산 의약품 수출 시 PIC/S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한 GMP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어서 수출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엇보다도 PIC/S 회원국 간 네트워크 확보로 해외 제조원 관리가 용이해져 소비자 입장에서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연간 1,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 간 GMP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에 대해 GMP를 적용하게 되어 안전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됩니다.

● ●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 추진배경

- ① 자유무역(FTA) 환경 확대에 따른 국산 의약품의 신인도 확보 시급
- ② GMP는 수출 시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 작동하므로, PIC/S 가입을 통한 수출 동력 확보 필요
- ③ 의약품 관리제도, 규정의 국제조화 및 PIC/S 가입국 간 정보 공유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

■ 추진경과

- ① 가입신청서 제출('12.04)
- ② PIC/S 평가단(5개국) 방한 현장평가('14.01)
- ③ PIC/S 가입 승인 결정('14.05) 및 가입국으로 승격('14.0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소 설치 확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 043-719-2313)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4년 188개소로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 어린이집, 유치원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조리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교육 실시, 급식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어린이 급식용 식단,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등 급식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센터 지원을 받은 급식소 어린이들의 '13년 식생활 습관을 '11년과 비교한 결과 식사전 손씻기는 46.4%, 편식 감소율은 14.4%, 음식 남김 감소율은 27%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어 어린이들의 식생활 행동변화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188개 센터를 운영하여 전체 어린이 급식소의 28%(13,544개소), 어린이 48%(68만명)가 센터의 수혜를 받아 어린이 급식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소 확대 설치

■ 추진배경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88개소→188개소)

※ 수혜 어린이 비율 : ('11) 4% → ('12) 9% → ('13) 21% → ('14) 48%

■ 시행일 : 2014년 12월 말까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51)

■ '14. 12월 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력추적 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위해 「식품위생법」(‘13.7월)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3.8월)을 개정하였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14~'17년까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제조·수입업소) 및 영업장 면적 규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르면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14. 12.1일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 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합니다.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 또한,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도 '14. 12.1.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여 보관토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4.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추진배경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주요내용

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자율→단계적 의무화)

※ 제조·수입업소 연매출액 : ('14.12.)50억이상 → ('15.12.)10억이상 → ('16.12.)1억이상 → ('17.12.) 전체

※ 기타 식품 판매업소 매장면적 : ('14.12.) 1,000㎡이상 → ('15.12.) 500㎡이상 → ('16.12.) 300㎡이상

■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14.3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2632)

■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14. 12.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건의료분야에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 주요내용

- ①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신청만으로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가능

■ 시행일 : 2014년 12월 19일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해썬 의무적용 확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56)

■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다소비식품인 떡 그리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 대해 해썬(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어묵류 등 6개 품목,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배추김치에 대해 해썬 의무적용을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 및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의무적용이 추진됩니다.

※ 신규 의무적용 품목(8개)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당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해썬 의무적용 확대 및 용어 변경

■ 추진배경 :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까지 해썬 의무적용 추진으로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확대

■ 주요내용

① 의무적용 대상 확대

※ 신규 의무적용 품목(8개)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당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 추진단계(4단계) : (‘14.12)20억이상 → (‘16.12)5억이상 → (‘18.12)1억이상 → (‘20.12)1억 미만

※ 연매출 100억 이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 ‘17.12부터 시행

② 해썬 용어 변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시행일 : ① 1단계 2014월 12월 1일(~20년까지 단계별로 시행) ② 2014년 11월 29일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42)

■ '14. 7. 1. 부터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조제분유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이 의무적용이 확대됩니다.

- 현재 축산물 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HACCP 기준을 갖추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 왔습니다.
- 2014. 7. 1.부터는 동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단계적으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도축장에 한하여 적용해 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 추진배경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어린이, 영·유아 등의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 의무화하여 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운영해야 하는 영업자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집유업은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은 '14.7.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은 '15.1.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량은 '16.1.1일 적용 시행

** 유가공장은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15.1.1부터 '18.1.1까지 적용시행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 043-719-4064

-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연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과 산업체는 개방되는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추진배경 :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진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

■ 주요내용

①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공유·활용

행정업무통합시스템	식약처·지자체간 인허가 정보 등을 연계하는 통합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공동활용시스템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통합DB 구축
식품안전정보 포털	전자민원, 상담·신고, 행정정보 등 대국민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4년 12월 시스템 구축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통합 및 치약제 불소 함량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의약외품T/F) (☎ 043-719-3703)

■ 의약외품 마스크가 4분류에 2분류로 통합 · 개선됩니다.

- 기존 의약외품 마스크는 보건용(입자차단 성능 없음), 수술용, 황사방지용 및 방역용, 이상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이중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보건용’ 마스크는 방한대 등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은 그 명칭으로 인해 황사 발생이나 방역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은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새로운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 · 관리합니다.
- 이 제도 개선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차별화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황사나 미세먼지 등 발생 시에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유도하여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의약외품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가 1,000ppm에서 1,500ppm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존 의약외품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는 1,000ppm입니다.
 -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1,000ppm 보다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1,500ppm으로 치약제의 불소 함량을 관리하고 있어, 치아 전문가의 충치 예방 효과 강화 요구와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 의약외품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를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이 제도 개선으로 충치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제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의약품 마스크 및 치약제 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의약품 마스크 관리 제도 개선 및 치약제 불소 함량 상향 조정 건의

■ 주요 내용

- 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품에서 제외하고, '항사방지용'과 '방역용'을 새로운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개선
- ② 의약품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를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14년 9월(예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043-230-0433)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하여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위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수리업체는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유통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2014년 11월 10일부터는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소재 및 유통량을 전산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위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 **추진배경**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기록 및 자료 정기보고(필요시→매월)
- ②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마련(소재 및 유통량을 전산 추적관리)

■ **시행일** : 2014년 11월 10일(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14.5.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및 6개월 유예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품질과 (☎ 043-230-0455)

■ '14. 7. 29. 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후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자사의 기준 및 요건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자율적으로 선임·운영하였으나,
 - '14. 7. 29.부터는 신규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을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업 허가시 선임한 품질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16. 7. 29.까지 품질책임자를 선임하여 제조·수입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제조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업계의 자율성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고용을 통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품질책임자를 두도록 허가 요건으로 규정
- ② 품질책임자는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
- ③ 제조·수입업자에게 품질책임자의 업무방해 금지 및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벌

■ 시행일 : 2014년 7월 29일

※ 단, 기존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품질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유예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230-0404)

■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체외진단용 제품 중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분류·관리되고 있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등 체외진단용 제품 관리 체계의 이원화로 업계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으나,
-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허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4. 11. 10.부터는 모든 체외진단 제품이 의료기기로 관리되며, 따라서 소비자는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던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업자로부터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관련 업체들은 기존 허가증을 2014.12.31.까지 의료기기 허가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3,4등급의 경우 2015.11.9.까지, 2등급은 2016.11.9.까지 의료기기 GM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체외진단 제품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제품구매가 편리해져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 추진배경 : 업계 및 소비자 편의도모를 위해 체외진단 제품 관리체계 일원화

■ 주요내용

- ① 체외진단용 제품 중 진단기기는 의료기기, 진단시약은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로 다원화 관리되던 것을 의료기기로 관리체계 일원화

■ 시행일 : 2014년 11월 10일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 043-719-1811)

■ '14. 7. 31. 부터는 식약처 지정 시험 ·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 · 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됩니다.

- 그동안 시험 · 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등 6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식품 · 축산물 · 의약품(한약재 포함) · 화장품 · 의료기기 시험 · 검사기관으로 구분되고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지정 · 관리되어 왔습니다.
- '14. 7. 31.부터는 시험·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 및 시험·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 · 검사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이 법률의 시행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시험 ·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①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 ② 국제 기준과의 조화
- ③ 시험·검사능력 제고
- ④ 산업 지원·육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재지정 등- 처분기준- 과징금·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요건 및 절차<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변경·유효기간연장·재지정 등- 시험·검사기관 세부 처분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기준- 우수시험·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준에 따르는 품질관리기준 세부사항-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 등 요건 및 절차
〈시험·검사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검사능력 평가- 교육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검사 능력 평가·관리 절차- 검사원 등 의무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산업 지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마다 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 시행일 : 2014년 7월 31일

10 공정거래 · 조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044-200-4331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여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등 순환출자의 폐해사례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수 없었으나,
 - 2014년 7월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함으로써
 - 향후 신규순환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차단하면서,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하여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소식 > 보도/해명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3.12.31.)

●●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해 과도한 지배력 유지, 부실계열사 지원 등 폐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바,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다음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

- ①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행위
- ②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하는 행위

※ 다만,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합병, 분할, 영업 전부양수, 담보권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 넓게 허용

■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순환출자에 대한 현황 공시,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추가,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작업 진행 중

과징금 감경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2

■ 과징금부과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위해서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와 같은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가중·감경 조정 사유와 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특히,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하여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공정위의 과징금액 결정 과정

산정 과정	①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 (산정기준*)	② 가중·감경 조정 (1·2차 조정)	③ 과징금 부과 결정 (부과과징금)
고려 요소	· 위반 행위 유형 · 중대성 정도	· 가중: 위반 기간·횟수 등 · 감경: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 재무상태(자본잠식·파산) 등을 감안해 최종 조정

※ 산정기준은 “위반액 × 부과기준율”로 산출되며, 과징금 부과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임.(세법상 과세표준과 유사)

- 개정 과징금부과고시가 시행되면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감경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함에 따라 향후 범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범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소식 > 보도/해명 > 과징금부과고시 개정(2014.2.14.)

●● 과징금부과고시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과징금 감경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가중기준 조정	<p>▶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범위반 사업자의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 → (개정)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
감경기준 조정	<p>▶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순가담자) 감경상한을 30% → 20%로 조정 ※ 기망·강박에 의해 참여한 경우는 30% 상한을 유지 ② (조사협력)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 → 10% ※ 사업자의 조기 협력을 유도 ③ (자진시정) 자진시정을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상한을 30% → 10%로 조정) ※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제거된 경우는 감경상한 30% 유지 ④ (CP운용)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용업체(평가A등급 이상)에 대한 감경 → 폐지(범위반 예방이라는 CP제도 본래의 취지 감안) ※ 다만,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별도 규정 <p>▶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납부 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예: 자본잠식 상태)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50% 이내에서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50% 초과 감경도 가능 ※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현행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 •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 고려하되, 독립적 감경 사유로는 불인정 ※ 현행은 시장·경제 여건을 별도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황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근거 규정을 폐지

■ 시행일 : 2014년 8월 21일

보증기간 확대 등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가 올해 하반기(11.29.)부터 대폭 개선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제고가 이루어집니다.

- 첫째,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존재하였더라도 공사이행 중 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사유 소멸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대금 지급수단이 어음 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 어음 등의 만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보증 기간을 연장하여, 어음 등의 부도로부터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셋째,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보증 증권만 청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 · 해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 통과(2014. 4. 28)

●● 보증기간 확대 등 지급보증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지급보증과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권리제고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기한 명시
- ②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기간 명확화
- ③ 지급 보증 면제 사유 소멸 시 지급 보증 의무 구체화
- ④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이행 보증 청구 제한

■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638)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주어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해서는 안됩니다.(2014. 8. 14.부터 시행)

- 가맹본부는 2014. 8. 14.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 또는 신규 가맹점 개설 시에 영업지역 설정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때 종전보다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해명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4. 2. 4.)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 추진배경 :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보
- 주요내용 :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금지
- 시행일 : 2014년 8월 14일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창업초기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창업초기기업은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심사 및 평가 등에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창업초기기업은 공공구매 입찰 경영상태 평가(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시 만점을 적용하고 납품실적 평가에서도 기본가점(3점)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도 면제하고 있어, 창업초기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시 소기업의 참여비율을 현재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하고 창업초기기업 참여시 평가점수 2점을 부여하여 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종합쇼핑몰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별도 전용몰을 구축하고, 마크를 부여하여 수요기관에서 창업초기기업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종합쇼핑몰홈페이지 > 전용몰 > 창업초기기업제품

● ●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

■ 추진배경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판로를 지원

■ 주요내용

- ① 창업초기기업의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②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요건 중 소기업의 참여범위를 30%이상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년 7월(개정안 내부심의중)



아파트단지 등 민간에 전자조달 포털서비스 제공

조달청 정보기획과 (☎ 070-4056-7296)

■ 아파트단지,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투명, 공정한 조달 계약을 지원하도록 **정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개방하여 편리한 전용 포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 아파트관리사업자 선정, 화재보험 등 복잡한 계약을 입찰, 계약, 대금지급까지 지원하는 전자조달 포털을 구축('14.12월)하여 더 쉽고 편리하게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4만 7천 공공기관, 28만 조달기업이 이용하는 전자조달 플랫폼 나라장터를 아파트단지, 영농·영어조 합법인에 개방('13.10월)

** 민간 개방 범위를 ('14년) 비영리단체 → ('15년) 중소기업으로 서비스는 ('14년 하반기) 전자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으로 단계적 확대 계획

■ 민간의 조달 과정에서 입찰, 계약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표준 입찰공고, 계약조건, 유의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 법률, 기술 등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전자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종류별 표준입찰공고문, 표준계약조건을 마련하여 민간 수요자에게 제공('14.8월)합니다.

나라장터 민간개방

■ 추진배경

-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아파트단지, 영농·영어 조합 등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13년부터 개방, 확산

■ 주요내용

- 계약비리 없이 전체 조달업무를 투명하게 처리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민간과 공유하고, 개방 대상과 서비스를 계속 확대
 - ※ (범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영농어조합법인('13년) → 비영리법인('14년) → 중소기업('15년)
 - ※ (서비스) 전자입찰('13년) →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체 조달업무('14년)
- 민간 수요자에 특화된 전용 포털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 PC 해킹 등에도 안전한 가상 입찰서비스 제공
- 표준 입찰공고문을 제공하고, 입찰유의서·표준계약조건 등을 마련하여 민간의 공정한 입찰·계약을 적극 지원

'아파트 관리' 전자입찰 나라장터에서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 실시

2013년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어조합법인 (3만여 개)

2014년 비영리단체 (1만여 개)

2015년 중소기업 (323만 개)

2016년

전·면·개·방



나라장터 개방 효과



- 1 투명한 거래
입찰·낙찰 정보 실시간 공개
- 2 최고의 선택
26만여 개 조달업체 경쟁 통한 최적 공급자 선정
- 3 경제적 구매
물품·서비스·시설공사 거래 가격 정보 개방
- 4 거래비용 절감
서류 제출 과정 없어 업무 효율 향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시설총괄과 (☎ 070-4056-7338)

-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사 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하였으나, 2014년 8월 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

●●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기업체 수주기회 확대

- 추진배경 :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체 어려움 해소
- 주요내용
 -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5년으로 확대·일원화하고, 만점 기준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 이내로 완화
- 시행일 : 2014년 8월

해외 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쏙 소비재로 확대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481-7835)

-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목록통관*** 대상을 **쏙 소비재로 확대**합니다.

*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가능

-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되었으나, 2014년 6월 16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늘어납니다.
 - 단,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을 지속** 배제합니다.
- 또한,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전자상거래업체만 지정받을 수 있었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새소식 > 보도자료 > 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

2014년도 목록통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① 목록통관 대상 쏙 소비재로 확대(단, 식·의약품 등은 제외)
 - ②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 폐지 및 신고제 전환
- 시행일 : 2014월 6월 16일

사후관리물품의 휴일 긴급상황 발생 시 ‘사후 수출승인’ 시행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2)

■ 사후관리물품이 공휴일에 긴급한 사유로 즉시 수출해야 할 경우 사후에 수출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사후관리물품은 공휴일에 고장 등의 사유로 즉시 수출해야 할 상황임에도 사전승인 요건 규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의 다음 근무일에 수출승인 신청 후 수출을 할 수 있었으나,
- 2014년 하반기부터는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수출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우선 수출한 후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수출 승인을 사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행정규칙입안예고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4년 하반기 사후관리물품 ‘사후 수출승인’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사후관리물품의 적기 수리를 통해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 주요내용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수출해야 할 경우 사후 수출승인 가능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205
• 안전행정부	205
• 외교부	206
• 산업부	206
• 특허청	208
• 원자력안전위원회	209
• 환경부	211
• 국토교통부	215
• 보건복지부	230
• 여성가족부	235
• 법무부	237
• 고용노동부	239
• 국가보훈처	243
• 국방부	243
• 방위사업청	244
• 병무청	245
• 교육부	246
• 문화체육관광부	246
• 미래창조과학부	249
• 방송통신위원회	252
• 농림축산식품부	252
• 산림청	255
• 식품의약품안전처	260
• 공정거래위원회	265
• 조달청	267
• 관세청	2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 획 재 정 부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 은 경우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 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하여야 함	☐ 건당 거래금액 기준 인하 ○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 원회 의결	소득세법 (’14.7.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2. 에너지세율 조정	☐ 발전용 유연탄 세율 ○ 비과세 ☐ 전기대체연료 세율 ○ LNG : 60원/kg ○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 : 104원/ℓ ○ 프로판(가정·상업용) : 20원/kg	☐ 발전용 유연탄 세율 ○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인 물품 : 19원/kg ○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 17원/kg ☐ 전기대체연료 세율 ○ LNG : 42원/kg ○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 : 72원/ℓ ○ 프로판(가정·상업용) : 14원/kg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4.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253)
안 전 행 정 부			
1.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 번호 수집 금지	① 주민등록 번호수집 법정 주의	☐ 정보주체 동의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보주체 동의요건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14.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8)
	② 과징금 부과	〈신설〉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 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개인정보보호법 (‘14.8.7)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8)
	③ 징계 권고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 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	○ 징계권고 대상에 대표자도 포함됨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14.8.7)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8)
외 교 부				
1.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도입	여행 경보제도 변경	○ 여행경보제도 1단계 - 여행유의 2단계 - 여행자제 3단계 - 여행제한 4단계 - 여행금지	○ 여행경보 신호등제도로 변경 남색경보 - 여행유의 황색경보 - 여행자제 적색경보 - 철수권고 흑색경보 - 여행금지 ☞ (참고)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여행경보제도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7)
산 업 부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신설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고자 하 는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 아야 함	도시가스사업법률 (‘14.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자가소비 외에 제3자에게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처분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함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사업소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함 <p>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입력)</p>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2.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 사업 신설	○ '09년에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종 류에 포함되었으나, 별도 의 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허가절차 등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을 하고자 하는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자는 사업소의 안전확보를 위해 적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 술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p>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입력)</p>	도시가스사업법률 (‘14.7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3.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내 발생한 증발가스를 자가 소비용직수입자에게 판매 또는 교환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규정 ○ 천연가스반수출입업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대상 규정 	도시가스사업법률 (‘14.7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반입·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시 신고절차와 방법 규정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입력) 	
특 허 청			
1.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① 특허권 회복 대상	○ 실시 중인 특허발명 ○ 모든 특허발명	특허법 (‘14.6.11)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 등록과 (042-481-5233)
	② 특허권 회복 납부료 (정상납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 대비)	○ 3배 ○ 2배	특허법 (‘14.6.11)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 등록과 (042-481-5233)
2. 특허부터 상표·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 대상 : 특허·실용신안 ○ 실시증명서류 : 실시품 사진 및 거래영수증 제출 ○ 일괄심사 신청출원 모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 실시증명서류 : 실시품 사진 또는 거래영수증 중 어느 하나 제출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대신 열람 허용 ○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심사 신청 ※ (참고)특허청홈페이지>정보마당>KIPO News>보도자료>신제품의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로 ‘한 방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고시 (‘12. 4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①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1.1.1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 방법의 발명 ○ 물건의 발명 ○ 기록매체 청구항 ○ 데이터기록매체 청구항	1.1.1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범주 (1) 방법의 발명 (2) 물건의 발명 (2.1) 기록매체 청구항 (2.2)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신설) (2.3) 데이터구조, 데이터기록매체 청구항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간행물>심사지침, 기준, 매뉴얼>특허·실용신안심사지침서>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 심사지침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14.7.1일 출원부터)
				특허청 컴퓨터시스템 심사과 (042-481-5776)
	② 판단의 구체적인 수법	2.2.2. 판단의 구체적인 수법 (1)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	2.2.2. 구체적인 판단방법(개정) (1)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 (2) 소프트웨어가 복수의 컴퓨터장치와 상호협동관계 (신설) (3) 하드웨어의 비휘발성 저장매체 또는 반영구적 저장매체에 기록되는 경우 (신설) (4) 인간의 정신활동(판단행위)의 불포함 (신설) (5)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되는지 여부 (신설)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14.7.1일 출원부터)
				특허청 컴퓨터시스템 심사과 (042-481-5776)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전 시설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안전 사고 예방을	① 품질비리 감시 대상 확대	○ 원자력관계사업자 대상	○ 원자력관계사업자 뿐 아니라 부품 및 기기설계·제작·성능·검증업체까지 대상 확대	원자력안전법 ('14.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02-397-72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	② 원자력 안전법 위반시 처벌 강화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 과징금 - 원자력분야 : 50억원 이하 - 방사선분야 : 5억원 이하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원자력안전법 (‘14.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02-397-7283) 원자력심사과 (02-397-7217)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③ 원전비리 제보 활성화	-	○ 포상금 지급 ○ 본인연류 제보시 제보자 형량 감면	원자력안전법 (‘14.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02-397-7245)
	④ 방사선 안전 관리자 의무화	-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및 역할 관련 법률 조항 신설	원자력안전법 (‘14.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⑤ 발주자 안전 조치 의무화	○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없음	○ 발주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 한 작업환경 제공 의무 부여	원자력안전법 (‘14.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⑥ 원전 사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 고시에 위임 - 8~10km 이내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사항을 법 률로 상향 조정(발전용 원자로 및 관 계시설 설치점 기준)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3~5km 이내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20~30km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4.1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적 장치 보완· 강화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3)
	⑦ 핵 관련 범죄 대상 확대	○ 핵물질 대상	○ 핵물질 뿐 아니라 방사성물질, 핵폭발 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 출장치, 관련시설까지 대상 확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4.8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2)
환 경 부				
1. 친환경 위장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시행	①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감시· 관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표시·광고를 관리	○ 개별법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등을 감시·관리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 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4.9.25.)
	② 과태료 부과	○ 1억원 이하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중지하 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 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4.9.25.)
	③ 부당 표시· 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 표시·광고를 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제조업자 벌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14.9.25.)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9)
2.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확대 및 유해 어린이용품 공표관련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14.9.25)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9)
3. 반복적, 고질적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①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하여 초과하는 사업장은 사용중지명령을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하여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용중지에서 조업정지로 명칭 변경 ○ 아울러,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사업장은 조업정지명령을 처분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환경부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악취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9.25)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② 과징금 한도액 상향	○ 5천만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이하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환경부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악취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9.25)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③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장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환경부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악취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9.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별칙 강화		월 임시국회 통과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4.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허용, 품질검사 등 강화	①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 연료제품 수입허용	○ 신규	○ 고형연료제품 수입 허용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허용, 품질검사는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7.22)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② 고형연료 제품 수입· 제조· 사용 시 품질검사 및 시설 관리 기준 강화	○ 고형연료제품 품질 인증제도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품질표시, 제 조·사용시설 정기검사제도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허용, 품질검사는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7.22)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③ 폐자원 에너지센 터 설치 및 한국 폐자원에 너지협회 설립 근거 마련	○ 신규	○ 폐자원에너지센터 설치 및 한국폐자 원에너지협회 설립 근거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허용, 품질검사는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7.22)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5. 물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질약 투자대행 업체 풀 (POOL)에 참여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등 수행	○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 춘 업체가 물질약전문업자로 등록하 여 전문업체 중심으로 물질약사업 (WASCO) 활성화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수돗물 사용량 줄이는 물질약전문업 등록제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5)
6.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 강화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에 대한 관리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시 양도자만 양도 신고	○ 양도자와 양수자도 신고확대 ○ 양도·양수 및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진열 등의 행위시 입수 경위 증명서류 보관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기준 만든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14.7.1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 및 허가	○ 신규	○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인명 및 재산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종 중 총 20종) ○ 법 시행 당시 보유한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해야 함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기준 만든다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7.1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및 관리	○ 신규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인명 및 재산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종 등 90종) ○ 사육시설을 등록한 시설중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보전시설, 동물원 및 수족관 등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기간을 6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14.7.1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기준 만든다	
국 토 교 통 부				
1.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한 완화	① 민간 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확대	○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로 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12월예정)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4)
	②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	○ 공급범위가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용 토지등으로 제한,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공급대상 및 심의절차 폐지, 공급범위 한도만 설정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12월예정)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4)
2. 기업 도시 공원 녹지 설치 기준 개선	① 공원	○ 최소 12㎡/인 이상(녹지제외)	삭제	기업도시 계획기준 ('14.10월)
	② 중앙 공원	○ 인구규모 5만 이상 : 최소 10만㎡이상 ○ 인구규모 5만 미만 : 최소 5만㎡ 이상	현행과 같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③ 공원 녹지	구분	사업규모	계획기준	○ 상주 인구당 1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기업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공원 녹지율	990만㎡ 이상	28% 이상		
			660만㎡ 이상	26% 이상		
			330만㎡ 이상	24% 이상		
		1인당 공원녹지 면적	990만㎡ 이상	17㎡ 이상		
			330만㎡ 이상	15㎡ 이상		
3.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 지원기준 없음			○ 대상 :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 지원액 : 최대 건축비 25% (협의중)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신행정수도법	신행정수도법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9)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 (044-200-3131)
4.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 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의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구내매점 등 ○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의 편익시설 - 제1종 근생시설(휴게음식점마을회관), 제2종 근생시설(극장 등,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등),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어린이회관 ○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교육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기반시설에 설치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 규칙개정 (‘14.10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중형(60~85㎡) 분양주 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60~85㎡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60~85㎡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제21조 (‘14.7월)
		공공 분양	원가 110%	원가 100%/90%	공공 분양	감정가 (상한: 원가 110%)		국토교통부공공주 택개발과 (044-201-4541)
		민간 분양	감정가	원가 100%/90%	민간 분양	감정가	감정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중형 분양주택용지 공 급가격 현실화			
6.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 확대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대상 :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 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 :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 급 이상 장애인 세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3 (‘14.7월)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공공주 택개발과 (044-201-4541)
7. 중개사무소 개업 이외 에 종사자로 취업하는 때도 교육이수 필요		○ 중개업자: 실무교육 (32~44시간)			○ 중개업자: 실무교육(28~32시간), 연수 교육(12~16시간)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28~32시간), 연수교육(12~16시간)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3~4시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4.6.5)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8)
8. 산업 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① 복합 용지 도입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 지, 공공시설용지 등 용지 별로 입주가능시설 제한			○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4.7.15)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② 복합 용지에는	○ 산업시설용지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			○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하고, 도시첨단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 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도시첨단 산단과 재생사업 지구에서 는 최대 용적률 적용		단과 재생사업지구에는 최대 용적률 적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4.7.1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9.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① 민간 시행자에 건축 사업 허용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에 한해 건축 사업 허용	○ 모든 사업시행자(공공 또는 민간)에게 건축사업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4.7.1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② 대행 개발의 범위 등 확대	○ 공공사업시행자가 산업용 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한해 대행개발 허용	○ 공공사업시행자 외 민간사업시행자도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시 설용지를 포함한 모든 용지에 대행개 발을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4.7.1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10. 산업 단지 계획 변경 제한 완화	① 네거티브 업종 계획 방식 도입	○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명기하고, 부합 하는 업종만 입주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4.7.1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 준공된 산업단지 에서 개발 행위 절차 간소화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만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외 사항은 개발계획을 변경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중요사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중요사항 외에는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4.7.1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11.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신설〉	○ 하도급대금 등의 상습 체불업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 ○ 저가로 낙찰된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14.11.15)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1)
12.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신설〉	○ 공공공사 하도급계약 정보 공개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도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용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정보공개 등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건설산업기본법 ('14.11.15)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9)
13. 보증제도 운영 강화로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신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및 중도 해지시 보증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해당 내용 통보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교부시 발주자 직접지급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보증제도 운영강화로 하도급 업체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14.11.15)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3)
14.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 실시간 홍수정보를 홈페이지 및 SMS로 제공	○ 실시간 홍수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 확대 -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3634)
15. 우리나라 물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전문가 위주로 포털 운영	○ 일반국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포털 확대·개편 - 수자원 정보, 물관련 역사·문화, 오토캠핑장 등 수변 시설 현황 및 이용 정보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물포털 서비스 구축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5)
16.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신 설>	○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4.8.7)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044-201-4756)
17. 시도별 물류단지 실 수요만 검증되면 적 기 건설 가능	○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재배정 ○ (시·도) 사업 내인가 실수 요 검증	○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폐지 ○ 실수요 검증(국토부+시·도 공동)만으로 물류단지 지정 추진 ☞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제2차물류시설개발 종합(변경)계획 (‘14.7월)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18. 화물운송종사자 권리 보호 제도 강화	○ 신설	○ 운송사업 양도·양수 비용 위·수탁 차주에게 전가 금지 ○ 위·수탁차주 동의 없이 현물출자 차 량 저당권 설정 금지 ○ 양도·양수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위·수탁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도 승계 ○ 위·수탁 계약 기간 보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12월)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장기계약 시 운송사업자의 제한행위 금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산업과 (044-201-4018)
19. 직접운송의무제 예외 조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운송업체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상 장기계약 차량을 이용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직접운송으로 인정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12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
20.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린 후 다시 공항철도로 갈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에서 KTX를 타고 환승없이 인천 공항까지 이동 가능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인천국제공항 KTX 개통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81)
21.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바닥면적 최소 2㎡이상(특수 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바닥면적 최소 2㎡이상(특수 용도형의 경형화물 자동차는 1㎡ 이상 또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0.5㎡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화물자동차의 푸드 트럭 구조변경 허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잠정, ’14.7월)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044-201-3842)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22.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의무화 	항공법 (’14.7.15)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국제항공과 (044-201-4208)
23. 안전 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① 과징금 금액 상향	○ 최대 50억원	○ 최대 100억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항공법 (’14.11.29.)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044-201-4257)
	② 노선 운항 정지	○ 항공기 운항정지	○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정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항공법 (’14.11.29.)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044-201-4257)
24. 항공기 사용사업 분야 안전관리 강화	① 운항 증명	○ 미적용	○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운항증명 적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항공법 (’14.11.29.)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044-201-4257)
	② 운항 자격 심사	○ 미적용	○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운항자격심사 의무화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항공법 (’14.11.29.)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과 (044-201-4314)
해 양 수 산 부				
1.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		○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 매가격의 1천분의 10	○ 먹는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을 현행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0에서 1천분의 5로 인하 ※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공지사항>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법률 시행령 (‘14.12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2. 연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① 연안 침식 관리 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 규정 없음	○ 침식심각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연안관리법 (‘14.8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2)
	② 침식 관리 구역의 행위 제한	○ 규정없음	○ 침식관리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증축, 규사·바다모래 채취, 토지형질 변경 등 금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연안관리법 (‘14.8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2)
	③ 침식 관리 구역의 출입 제한	○ 규정없음	○ 연안침식으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연안관리법 (‘14.8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2)
	④ 침식 관리 구역의 연안 정비	○ 항만구역내: 국가 ○ 항만구역외 : 지자체 * 예외적 국가시행	○ 침식관리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은 국가가 우선시행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연안침식 문제	연안관리법 (‘14.8월)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업 우선 시행		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연안계획과 (044-200-5262)
	⑤ 침식 방지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 규정없음 * 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규정	○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의 침식방 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권리 를 매수 ○ 토지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권리의 매수청구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연안관리법 (‘14.8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2)				
3. 친환경 천일염인증 등 고품질 국산천일염에 대한 인증제 시행		○ ‘소금품질검사’ 식품기준 적합 여부판단	○ 천일염인증제도(3종)시행 ☞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식품기준은 물론 생산방식과 환경, 생산관리 상태 등 소금의 품질에 따른 인증	우수천일염 등의 생산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 고시) (‘14.7.1)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5449)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감,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명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 대상품목(2종) 확대 ☞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홍합(7월) 다시마(10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5. 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충돈수의 부분 측정 제도 폐지		○ 어선의 준공전에 충돈수 부분측정	○ 제도폐지	어선법 시행규칙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2)
6.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신설	○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평가 실시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 법령>어장관리법 조희>제11의2 어장환 경평가		어장관리법 (‘14.8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9)
7.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해역 확대 도입	○ 지정해역 주변 가두리양식 장 관리사에 대해서만 화 장실 설치 의무화	○ 모든 해역으로 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 다>법령>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4.7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8)
8. 컨테이너 하역 요금 관리 체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① 컨테이너 하역 요금 관리 체계 변경	○ 신고제	○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다른 품목 의 하역요금과 같이 컨테이너 하역 요금도 인가제로 전환 - 부칙 개정을 통한 3년 한시 적용	항만운송 사업법 (‘14.9월)
	② 컨테이너 인가 요금 관련 검사 근거 신설	○ 신설	○ 항만운송사업자의 인가요금 관련 사 항 보고 및 필요시 검사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기획과 (044-200-5753)
				항만운송 사업법 (‘14.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기획과 (044-200-5753)
	③ 컨테이너 인가 요금 관련 검사 근거 신설	○ 신설	○ 인가요금 위반 및 허위 보고 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항만운송 사업법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기획과 (044-200-5753)
9. 항만 배후 단지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① 항만 배후 단지 제조업 입주 자격	○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입주기업의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 지침(고시) (’14.7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② 1종 항만 배후 단지 입주 기업 선정 평가 기준	○ 사업능력(15점) ○ 사업계획(20점) 중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10점) ○ 화물유치창출(40점) 중 화물창출 마케팅계획(5점) ○ 투자·자금조달계획(20점) * 기타 건설계획(5점)	○ 사업능력(10점) ○ 사업계획(25점) 중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15점) ○ 화물유치창출(35점) * 화물창출 마케팅계획 삭제 ○ 투자·자금조달계획(25점) * 기타 건설계획(5점)은 현행 유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 지침(고시) (’14.7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③ 1종 항만 배후 단지	○ 제조기업 중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이고, 화물창출이 물류기업	○ 제조기업 중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3점)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 지침(고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입주 기업 선정 평가 기준 (가점)	보다 2배 이상인 경우 (+3점)	○ (신설)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2점)	(‘14.7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10. 도서민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 신설		○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의 20% 지원 ○ 대상 : 도서민 여객선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도서민 지분 100%인 비영업용 국산차량 ○ 지원차량 -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7월부터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해운법 제44조,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지침 (‘14.7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11.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기관 확대	○ 대한민국 영사		○ 지방해양항만청 및 대한민국 영사	선박법 (‘14.9.25)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12.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기간 확대	○ 유효기간 마지막 날 이내		○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후 45일씩 90일간으로 확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고시 (‘14.11월)
				해양수산부 해상안전시설과 (044-200-58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3. 항만재개발 사업 등에 민간투자 유치 확대	① 항만재 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 사업시행자 지정가능 공공기관 확대 -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추가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② 항만재 개발사업 대행 절차 신설	○ 신설	○ 사업시행자는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자의 사업 지도·감독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③ 항만재 개발사업 선수금 절차 신설	○ 신설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가격 등을 미리 협의하여 선수금 징수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④ 항만재 개발사업 원형지 공급 절차 신설	○ 신설	○ 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공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수부장관은 개발 계획 수립 후 공급 승인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⑤ 항만재 개발사업 조성토지 처분 방법	○ 신설	○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 입찰 등으로 조성토지 공급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⑥ 항만재 개발사업 개발이익	○ 신설	○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증가분의 일부를 항만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	항만법시행령 ('14.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투자 방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⑦ 항만재 개발사업 환지 절차	○ 신설	○ 환지 대상 종전 토지가액을 보상금 액으로 하고 환지가액은 해당 항만 재개발사업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함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⑧ 항만시설 안전점 검 실시 시기 등	○ 신설	○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 및 안전점검지침 작성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⑨ 항만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에 적합하고 ○ 해당항만을 이용하는 원자 재나 화물의 운송량이 고 시 기준 이상일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에 적합 할 경우로 입지기준 완화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⑩ 권한 위임	○ 신설	○ 국가관리연안항 및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은 지방청장에게 위임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⑪ 항만의 명칭· 위치 및 구역 중 항만의 명칭 등	○ 가거항리항 ○ 갈두항	○ 가거항리항 ○ 땅끝항	항만법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4.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	○ 추정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에 한해 경미한 사향으로 인정	○ 추정사업비의 변경은 그 규모에 관 계없이 경미한 사향으로 인정 ☞ (참고) 기본계획 변경기간 약 2개월 단축	항만법 시행령 (‘14.9월)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8)
보 건 복 지 부			
1.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진료항목별 산정비율 20~100%	○ 진료항목별 산정비율 15~50%로 축소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4.8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2.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 약사의 복약지도 시행 의무	○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 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 로 하도록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구체화 ○ 동 의무 위반시 과태료(30만원) 부과 ☞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약사법 시행령, 시행규 칙」 개정안 입법예고	약사법 (‘14.6.1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6, 2489)
3.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① 구급차 운용 신고제 도입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6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9/2554)
	② 이송 처치료 현실화	○ '95년 책정된 이송처치료 적용 ○ 미터기 등 설치 의무 없음	○ 이송처치료 50% 인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6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및 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요금의 종류</th><th>현재</th><th colspan="2">개정안</th></tr><tr><th>구분 없음</th><th>의료기관, 민간병원</th><th>비영리 법인</th></tr><tr><td rowspan="3">일반 구급차</td><td>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td><td>20천원</td><td>30천원</td><td>20천원</td></tr><tr><td>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td><td>800원 /1km</td><td>1천원 /1km</td><td>800원 /1km</td></tr><tr><td>부가요금 (응급의료 중사자 탑승)</td><td>기본요금의 50% 가산</td><td>15천원</td><td>10천원</td></tr><tr><td rowspan="2">특수 구급차</td><td>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td><td>50천원</td><td>75천원</td><td>50천원</td></tr><tr><td>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td><td>1천원 /1km</td><td>1,300원 /1km</td><td>1천원 /1km</td></tr><tr><td>공통</td><td>할증요금 (00:00~04:00)</td><td>-</td><td colspan="2">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td></tr></table> <p>○ 이송처치료 징수 구급차 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p>	구분	요금의 종류	현재	개정안		구분 없음	의료기관, 민간병원	비영리 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20천원	30천원	20천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800원 /1km	1천원 /1km	800원 /1km	부가요금 (응급의료 중사자 탑승)	기본요금의 50% 가산	15천원	10천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50천원	75천원	50천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천원 /1km	1,300원 /1km	1천원 /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9/2554)
	구분	요금의 종류	현재			개정안																																	
구분 없음			의료기관, 민간병원	비영리 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20천원	30천원	20천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800원 /1km	1천원 /1km	800원 /1km																																			
	부가요금 (응급의료 중사자 탑승)	기본요금의 50% 가산	15천원	10천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50천원	75천원	50천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천원 /1km	1,300원 /1km	1천원 /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③ 구급차 세부관리 기준 정비 및 강화	○ 상세 규정 없음	<p>○ 구급차 용도 추가 : 행사 대기</p> <p>○ 구급차 소독 기준 명시화 : 주 1회</p> <p>○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위탁 규정 강화(구급차 운용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의무화)</p> <p>○ 민간이송업체 인력기준 현실화 : 응급 구조사 12명, 운전자 12명 → 응급구조사 8명, 운전자 8명</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6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9/2554)																																			
4.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없음	24시간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4년 7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5. 접종비용 부담이 큰	○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전액 본인부담으로 실시(4회 접종, 회당 12~15만원 소요)	해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접종 가능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관리에 관한 법률 ('14.5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1)
6.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 주소지관할 보건소에서만 폐렴구균 무료접종 가능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주소지에 관계 없이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 (참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정부합동 민원제도 개선 ('14.8)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1)
7.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 비급여	○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4년 75세 이상→'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예정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4.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8)
8.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6인실 이상만 전액 건강보험 적용 ○ 1~5인실은 기본입원료만 건강보험 적용, 그 외에는 상급병실차액으로 전액 환자부담	○ (2014년 9월) 4·5인실 입원료 전액 건강보험 적용(4·5인실 비급여 병실료 폐지)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4.9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4)
9.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 외국도구인 K-ASQ, DENVER-II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실시	○ 우리나라에서 독자개발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건강검진실시기준 ('14.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자료)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10.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 검사수치를 숫자로 기입하여 제공	○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하여 서식 개선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건강검진실시기준 (‘14.9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11.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 -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 (‘14.7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12. 장애인 응급알림e (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 대상지역, 대상자 : 20개 시·군·구, 21백명	○ 대상지역, 대상자 : 78개 시·군·구, 82백명 ☞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응급알림e (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24조 (‘13.10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13.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 327천명(소득하위 63%) ○ 9.7만원 지원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 20만원 지원으로 확대	장애인연금법 (‘14.7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044-202-332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4.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14.7.2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15. 경증치매 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① 장기요양 5등급 신설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를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4.7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와 (044-202-3497)
	②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인 경우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6일간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14.7.25시행)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7)
16.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 노인일자리 24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31만개 제공 - 재능활용형 일자리 신설(3만개) * 대상 :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 	노인복지법 제23조 ('14.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5)
17. 65세이상 대부분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 제도 - (대상)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기준 70% - (지급액) 2013년 기준 96,800원(A값의 5% 수준) * 부부수급자 154,900원	○ 기초연금 제도 - (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70% - (지급액)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 20만원 ** 부부수급자는 32~4만원	기초연금법 (‘14.7.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044-202-3622)
여 성 가 족 부			
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한층 강화	○ 신고대상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활동주최 제한 - 제한없음 ○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 임의규정, 정책적추진 ○ 유스호스텔의 활동지원 - 규정 없음 ○ 운영·활동중지 명령 - 규정 없음 ○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 -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자 율적으로 인증 신청	○ 신고대상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 소년수련활동 중 일정규모 이상 인원 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 ○ 활동주최 제한 -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 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 제한 有 ○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안 전점검 및 종합평가 의무화 ○ 유스호스텔의 활동지원 - 수련시설의 설치 시 허가된 시설·설 비의 범위에 한정 ○ 운영·활동중지 명령 - 시설 붕괴,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아동학대행위 등이 발 생 시 수련시설의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 명령 가능 ○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 -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 인 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 의 무화	청소년활동진흥법 (‘14.7.22 시행)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프로그램 위탁제한 -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활동 프로그램 위탁제한 - 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가능 	
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맞춤형 치유를 위한 상설기관 운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개인, 집단상담, 수련활동, 대안활동 서비스 등 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환경과 (02-2100-6302)
3.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14년 하반기부터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4.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 ○ 교육 부실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조치 실시 ○ 점검결과의 기관평가* 반영 요구 가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 점검 결과의 언론 공표 의무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법 (‘14.7.22)
			성매매방지법 (‘14.9.28)
5.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 추가피해 확인시 성희롱 관련자 징계 요구 -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 공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기관평가에 반영 요구 ○ 추가피해 확인시 성희롱 관련자 징계 요구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발생 사건 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14.7.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및 기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성희롱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 수립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없음 	<p>페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 확인시 관련자 징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및 기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 포함 	<p>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p>
법 무 부			
1.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관(보호관찰소·소년원·치료감호소)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부재 ○ 기부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각 개정하여 보호기관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부자에게 기관 명의를 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p>	<p>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7월)</p>
			<p>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30)</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① 아동 학대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 「형법」에 따라 처벌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 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9.2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②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무 범위 확대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 부과(22개 직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부과 (24개 직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9.2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③ 피해아동 신속 보호	○ 없음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다양화 및 응급조치를 한 사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9.2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④ 원가정 회복	○ 없음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수강 명령 등 보호처분과 치료·상담·수강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원가정 회복 도모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9.2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⑤ 학대 피해아동 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진술 조력인 지원	○ 성폭력범죄 피해자만 지원	○ 학대피해아동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 료>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9.2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⑥ 피해 아동보호	○ 없음	○ 학대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위탁, 치료위 탁,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등 피 해아동보호명령 신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 료>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9.2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⑦ 사건 관리회의 신설	○ 없음	○ 아동학대 조기발견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검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 의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 개최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 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4.9.2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고 용 노 동 부				
1.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축소	○ 체납한 첫째 달은 체납액 의 1.2%, 1개월 경과 시 마다 1.2% 추가징수 <한도 36개월(43.2%)>	○ 체납한 첫째 달은 체납액의 3%, 1개 월 경과 시 마다 1% 추가 징수 <한도 9%>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9.2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신용카드납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허용 - 납부한도 및 납부대행 수수료율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9.2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3.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전후휴가 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근로기준법 ('14.7.1)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신 초기·후기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14.9.25) * 300명 미만 사업장은 '16.3.25 시행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5.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인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자 야간근로인가 시 24시 이후 근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인가는 24시까지로 제한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 허용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4.8.)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6.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신설	○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강요·할당·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금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14.7.2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460)
7. 중소기업 사내근로복 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	○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14.7.2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0)
8.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 개선	① 소액임금 감소 생계비 신설	신설	○ (융자 대상) - 현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개인 사정 및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여 월평균소득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 요건) - 200만원 한도(상환시 재신청 가능),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 연리 3%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14.5.2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1)
	②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 개선	○ (노부모 요양비) - 융자 신청자 1인당 총 3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 노부모 1인당 연 300만원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14.5.23)
		○ (자녀학자금 융자대상) - 2자녀 이상 가구	○ (자녀학자금 융자대상) -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1자녀인 경우에도 융자 대상에 포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근로복지사업 운영 규정 개정	(044-202-7561)
9.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부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제2항제2호, 근로감독관 직무규정('14.8.)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10.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 임금 지급 의무화	○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14.9.19.)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1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보호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금전보상 명령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14.9.19.)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757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 가 보 훈 처			
1.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장기복무 월50만원 * 최장 6개월간 지급	○ 장기복무 월 50만원 ○ 중기복무 월 25만원 * 최장6개월간 지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14. 7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044-202-5737)
국 방 부			
1. 금품수수·공금횡령으로 징계시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 조항 없음(신설)	○ 금품·향응 수수(授受)와 공금을 횡령 (橫領)·유용(流用)한 군인에게 징계와 는 별도로 금품과 향응 수수액, 공금 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 계부가금을 부과 ☞ (참고)국방부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 보>국방관계법령>군인사법(제56조의 2)(신설)	군인사법 (’14.12월)
			국방부 법무과 (02-748-6818)
2. 군인·군무원의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 수여대상 - 장관급 장교 ○ 수여시기 - 장관급 장교 진급시	○ 주요내용 -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 및 4급 이상 군 무원에게도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 수여 ○ 수여시기 - 영관급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진 급시	군인사법시행령 (’14.7.1.) * 법령 공포 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
3.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 군무원의 직종 통합	○ 일반직·별정직·계약직 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단일화 ☞ (참고)국방부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 표대상목록>업무계획>달라지는 국방업 무>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종 일반직 으로 통합	군무원인사법 (’14.8.20)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	○ 2011년 10월 31일까지	○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법 시행후 6개월)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2014. 5. 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4.5.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방 위 사 업 청			
1.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 신 설	○ 일반군수품 생산 중소기업의 R&D 자금,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자금대출 지원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0.2%p) ※ (참고)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14.6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8)
2. 조달예비판단 정보 조기 공개	○ 공개시기 : 당해년 1월 ○ 조달예비판단 정보 미공개	○ 공개시기 : 전년도 11월 ○ 공개대상 규정 (품목, 재고번호, 수량, 예산, 납기 등)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업체 의견 제시 및 추가 자료 제공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 관리규정 ('14.11월)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02-2079-4173)
3.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 신 설	○ 담합유형에 따른 '담합의혹 행위' 23개, '허용되는 행위' 14개 판단기준 제시 ○ 담합의혹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14.6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담합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02-2079-4173)
4. 국방분야 참여 업체의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방법 개선	○ 일정기간 일정 수량 생산 능력 보유 여부 판단기준 없음 ○ 생산·정비능력 확인 합격 후 재확인 면제기간 : 2년	○ 일정기간 대량생산 능력을 측정하여 확인기준서에 반영 ○ 생산·정비능력 확인 합격 후 재확인 면제기간 : 3년 ☞ (참고)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사이버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14.4월)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02-2079-4113)
5. 성숙된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	○ 3년 또는 4년 이내 ○ 신 설 ○ 신 설	○ 3년(36개월)으로 단축 ○ 활용계획 미포함 과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외 ○ 비용분석 절차 추가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 ('14.6월)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02-2079-6326)
병 무 청			
1. 사회복지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사회복지요원 질병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병역법 (2014.5.9)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복무관리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 부과	〈 신 설 〉	○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는 자연계대학원의 장에 대하여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및 종사의무 위반 등 복무관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병역법 (2014.11.28)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
3.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u>200만원</u> 이하의 벌금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	병역법 제90조 (2014.8.10.)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70)
교 육 부			
1.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수준별(A/B형) 수능	○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 실시 ☞ (참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홈페이지>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마당>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학습방법 안내 및 Q&A	고등교육법 시행령 ('13.3월)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2-3704-3672)
2.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없음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 시행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62만명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14.5.14)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이용 시 해당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필요	○ 국가·지자체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12. 7월 1일 시행)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 중 공공누리 적용 저작물 자유이용 ☞ (참고)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2.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제도 마련·시행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 지원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 지역문화 자문사업단 지정 지원 ○ 문화도시 지정지원 ○ 지역문화재단 설립 지원 ☞ (참고)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13.12.31)	지역문화진흥법 (‘14.7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044-203-2557)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관련법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4.11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044-203-2522)
4. 3년 단위 호텔 등급 평가 의무화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화 ○ 등급 결정된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금지 ○ 등급결정정보의 공표 근거 마련 ☞ (참고)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모든 호텔은 3년마다 등급 받아야('14.2.20)	관광진흥법 (‘14.9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7)
5. 공공체육	① 공공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체육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14.5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9)
	②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율 일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재원의 3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체육시설은 종전대로 30%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체육시설의 긴급한 개보수는 30% 이상 지원 가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4.5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9)
6.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①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1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4.7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44-203-3245)
	②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행물 사재기 행위를 수사기관·행정기관에 고발·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200만원 이하) 지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4.7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44-203-3245)
	7. 출판문화 융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학교습참고서 제외) 적용 18개월 미만 도서(신간) 적용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구매 도서는 미적용 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이내 간접할인(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학교습참고서 포함) 적용 신간 및 구간(18개월 경과 도서) 적용, 구간에 대한 재정가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구매 도서만 미적용 (*도서관, 국가, 지자체 등은 정가제 적용) 정가의 15%이내 가격할인(최대 10)과 간접할인(경제적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44-203-324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미 래 창 조 과 학 부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소비자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보조금의 차별 지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일한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판매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small>☞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small>	<div>이동통신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4.10월)</div> <div>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1-1934)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4)</div>
	② 보조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단말기별 보조금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일한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판매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이통사가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금지 <small>☞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small>	<div>이동통신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4.10월)</div> <div>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1-1934)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4)</div>
	③ 보조금과 특정요금제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의무사용을 부과하는 사례 발생이용약관과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 금지 <small>☞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small>	<div>이동통신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4.10월)</div> <div>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1-1934)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4)</div>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④ 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 단말기 구매 소비자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4.10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와 (02-2011-1934)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4)
	⑤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	○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 발생	○ 약정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4.10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와 (02-2011-1934)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54)
	2.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	○ 전자파 등급(1, 2등급 중1) 표시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 도입	전파법 ('14.8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02-2110-1981)
	② 기지국 등 전자파 등급제 표시	-	○ 전자파 등급(1, 2, 주의, 경고 등급 중 1) 표시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 도입	전파법 ('14.8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02-2110-19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표준음량 기준 도입		-	○ 방송광고를 포함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규정	방송법 (‘14.11.28)
				전파방송관리과 (02-2110-1973)
4.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① 오픈 사이언스 랩 시범운영	-	○ 오픈사이언스랩 서비스 시범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확산과 (02-2110-2721)
	② 사이언스 데이터 맵 시범 운영	-	○ 사이언스 데이터 맵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확산과 (02-2110-2721)
5.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 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개편		○ 국가연구시설·장비만 관리, 연구기관별 공동활용 장비 공개·공유	○ 재원구분 없이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D/B를 구축하여 공개·공유하고, 기존 공동활용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공동활용시스템을 확대 개편	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개편 (‘14.12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확산과 (02-2110-7724)
6.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① 회의비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사전 원인행위(내부품의서,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요구	○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증명자료(영수증)만으로 집행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4.8월)
			※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부 연구제도과 (02-2110-27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 개인용 컴퓨터	○ 구매 불가	○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 허용 ☞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4.8월) 미래부 연구제도과 (02-2110-2732)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 조성		○ 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서버에 <u>암호화하여 보관·관리</u>	○ 기존 회원가입 등에서 수집하여 서버에 보관 중인 <u>주민등록번호 파기</u> ('14.8월까지) ☞ (참고)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기술지원>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안내>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14.8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18)
농 립 축 산 식 품 부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역 제한 폐지		○ 농신보 보증대상자에서 도시지역 소재 가공업자 제외	○ 농신보 보증대상자에 도시지역 소재 가공업자 포함 ☞ (참고)금융위홈페이지(www.fsc.go.kr)>알림마당>보도자료>제목 '농림수산업자' 입력>검색	농신보법 시행령 ('14.6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
2.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 신설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14.6)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공고>2014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계획(신청·접수) 공고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14.6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업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선급금 수령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복구업무 - 불이행시 선급금 반납 및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선급금 수령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원 ○ 재해예방 시설·장비 지원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이용시설, 양·배수시설, 방풍·방조망, 방상팬, 비상발전기 등 29종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p>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14.6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4)
4.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 -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추가) 말산업진흥계획서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p>	말산업육성법 시행령('14.8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4)
5.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과 교육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분야 - 교육 : 자격교육 30시간 이상, 보수교육(인증심사원) 6시간 이상/연 ○ 처분기준 : 부정 또는 부실인증심사 등위반행위시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조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4.9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6.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 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 신설	○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에 어업 추가 ☞ (참고)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9.25)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044-201-1877)
7.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 적 허용	○ 중도매인간 거래 금지	○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4.9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8. 인삼경작 신고기관 시·군 등으로 확대	○ 인삼경작신고는 인삼조합 에만 가능	○ 인삼경작신고기관을 인삼조합에서 관할 시·군 등으로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통합검색>인삼산업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14.9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9)
9. 단감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대상품목 및 지역 - 배(3개 시·군)	○ 대상품목 및 지역 - 배(12개 시·군) - 단감(3개 시·군)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 소식>보도자료>배·단감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14.11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6)
10.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법제명) 소 및 쇠고기 이 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이력관리대상) 소 및 쇠고기	○ (법제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이력관리대상) 종전 + 돼지 및 돼지 고기 ☞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알림마 당>보도자료>돼지고기이력제 도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4.12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1. 발농업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동계·하계 26개 품목(40만원/ha)○ 발직불 이행점검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동일필지에 대해서는 발직불금 동·하계작물 중복지급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에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을 추가(40만원/ha)○ 발직불 이행점검 기관을 추가 :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점검○ 명확하게 동·하계 작물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지급 가능(중방자료 구비) <p>☞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발농업직접지불제사업</p>	<div>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14.3월)</div> <div>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div>
12. 2014년도 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면적당 지급금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ha(10,000㎡)-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 /ha(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면적당 지급금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 안 : 970,187원/ha(10,000㎡)- 농업진흥지역 밖 : 727,640원/ha(10,000㎡) <p>☞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p>	<div>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14.3월)</div> <div>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div>
산 림 청			
1. 산지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산지 내 병원의 의료부대시설 설치 제한, 풍력발전시설단지의 산지면적은 3만㎡까지 편입 가능 등 산지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 완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산지내 병원의 의료부대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시설단지 편입면적 확대- 공장설립 최소 면적 기준 완화- 산지의 면적에 관한 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 등 <p>☞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	<div>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4.10월)</div> <div>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div>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 산림의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수목의 벌채 연령 기 준을 과도하게 설정	○ 목재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수목의 벌 채 연령 기준을 완화 - 소나무(50→40년), 잣나무(60→50 년), 낙엽송(40→30년), 참나무류 (50→25년), 포플러류(15→3년) 등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9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8881)
3. 수목의 굴취(캐내기) 기준 완화	○ 산림의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수목의 굴취(캐내기) 를 과도하게 제한	○ 굴취(캐내기) 허용 대상지(수목)를 확대 - (기준) 간벌기 이전 숲아내기 대상 입목 → (변경) 간벌기 이전 숲아내기 대상 입목 및 벌채 연령 도달 입목 ○ 경미한 굴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굴취 허용 - 대나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 터 미만인 경우 등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9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8881)
4.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	○ 목재제품 9개 품목 - 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 클보드, 목탄, 목재브리 켓, 목재칩	○ 목재제품 12개 품목 - (추가) 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 스틱복합재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4.12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완화	① 종묘 생산업자 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이양	○ 종묘생산업 등록 등의 권한 - 시·도지사	○ 종묘생산업 등록 등의 권한 - 시장·군수·구청장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9월)
	② 산림 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 (숯가꾸기)산림사업법인 등 록기준 - 산림경영기술자 3명 (기술1급 1명, 기술2급 2명) - 기능인영림단 6명 (기능2급 4명, 무자격 2명)	○ (숯가꾸기)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 (종전과 같음) - 기능인영림단 4명(기능2급 4명) ☞ (참고)산림청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7월)
6.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완화		○ 관련분야(산림, 의료, 보건, 간호) 학위취득자로 자격 기준 제한	○ 산림교육전문가 (숯해설가, 유아숲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기준으로 인정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7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7.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① 국유수목 장림 환 불 규 정 마련 및 감면대상 확대	○ 이장 등으로 인해 계약기 간 내 추모목 사용이 종료 되더라도 환불 불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감면대상에 미포함	○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 도록 관련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감면대상 으로 확대(포함) ☞ (참고)산림청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유 수목장 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14.7월)
				산림청 휴양치유과 (042-481-412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 국립 자연휴 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의 비수 기 주중에 국립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을 이용할 경우 객실 이용요금의 30% 또는 50% 를 감면 ☞ (참고)산림청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립자연휴양 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고 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14.11월)
	③ 백두 대간보호 지역 내 허용행위 완화	〈신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허용 ☞ (참고)산림청홈페이지>>행정·정책>법 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산림청 휴양치유과 (042-481-4211)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042-481-8815)
	④ 백두 대간보호 지역 내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 범위 명확화	〈신설〉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 을 명확히 구분 - (부대시설) 전기통신설비, 수도시설, 하수도 - (임시시설)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 장,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 · 운반시설 ☞ (참고)산림청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 한법률시행령 (‘14.9월)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042-481-8815)
	8. 임업 후계자 및 독림가 요건 완화	① 임업 후계자 요건의 기준	○ 5년 이상 재배경력 ○ 재배포지 - 자기명의 소유 - 대부 또는 임차 ○ 5년 이상 재배경력 폐지 ○ 재배포지 - 자기명의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 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14.8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완화		<p>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 또는 임차 ○ 재배하려는 자 추가 - 교육이수, 재배포지, 사업계획 요건 충족 <p>☞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p>	<p>산림청 산림경영소독과 (042-481-4191)</p>
	② 자연 독립가 요건 완화	○ 15ha 이상 산림경영	<p>○ 10ha 이상 산림경영</p> <p>☞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8월)</p> <p>산림청 산림경영소독과 (042-481-4191)</p>
	③ 수목원조 성(변경) 계획 승인여부 통보의무 신설	〈신설〉	<p>○ 20일이내에 승인여부 또는 지연처리 사유를 통보</p> <p>☞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4.9월)</p> <p>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9)</p>
	④ 수목원전 문가 교육과정 인증유효 기간 연장	<p>○ 최초인증 3년</p> <p>○ 연장 인증 2년</p>	<p>○ 최초인증 5년</p> <p>○ 연장인증 3년</p> <p>☞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4.9월)</p> <p>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18)</p>
	⑤ 수목원 승인	〈신설〉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취소 시 해당 산림의 원상회복 명령 전 청문절차를 이행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최소에 따른 산림원상 회복 명령시 청문절차 신설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9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9)
식품의약품안전처				
1. PIC/S 가입으로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① 방사성 의약품, 의료용고 압가스	○ GMP 미적용	○ GMP 의무화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식약처, ‘의약품실사 상호협력기구(PIC/S)’가입 성공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4.7월 공포, ‘15.7월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043-719-2780)
	② GMP 영문 증명서	○ 국내 및 WHO GMP에 적합함을 명시	○ 국내 및 PIC/S, WHO GMP에 적합함을 명시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식약처, ‘의약품실사 상호협력기구(PIC/S)’가입 성공	‘14.7.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043-719-2780)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소 설치 확대 운영		○ 전국 88개소	○ 188개소 설치 확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8.3월)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043-719-2313)
3. 영·유아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자율 시행중	○ 연매출 50억 이상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및 1,000㎡이상 기타 식품 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시행 규칙」 및 「건강기능식품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4.12월부터 이력추적제 의무화 ☞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입법예고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12.1. 시행)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55)
4.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시행	-	○ 제약사 부담금의 산정 기준 및 납부절차에 따라 부담금 납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인과관계 원인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부작용 피해 구제 보상금 지급 ☞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정 (‘14.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정 (‘14.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32)
5.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해섽 의무적용 확대 등	① 해섽 의무적용 품목 확대	○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음료류, 국수·유당면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까지 확대 ☞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2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4.12.1)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56)
	② 해섽 용어 변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용어 변경 ☞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식품위생법(제48조제1항)	식품위생법 (‘14.11.29)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6. 축산물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 도축업의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 * '14.7.1일부터 단계적으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확대(집유업, 유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14.7.1. 시행)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043-719-3242)
7.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	○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식품안전 일원화 행정지원 및 식품안전정보의 공개·공유로 선제적 식품안전 대응 체계 확립 ☞ (참고)식약처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본격추진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구축 ('14.12월) 식약처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구축추진단 (043-719-4064)
8.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통합 및 치약제 불소 함량 상향	○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 보건용(입자차단 성능 없음) - 수술용 - 황사방지용 - 방역용 ○ 의약외품 치약제 불소 함유 한도: 1,000ppm	○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 수술용 (기존 수술용) - 보건용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기존 황사방지용 및 방역용) *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은 의약외품에서 제외 ○ 의약외품 치약제 불소 함유 한도 : 1,500ppm ☞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고시 개정 후 '14.9월 예정) 화장품정책과 (의약외품T/F) (043-719-370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9.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정기보고	① 추적 관리대상 의료기기 에 대한 정기보고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제출	○ 취급자 : 매월 정기보고(자료 제출) ○ 의료기관 개설자 : 자료 제출 요구시 10일 이내 제출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4.11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33)
	② 추적 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준코드 마련	-	○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부착 또는 기재 를 통해 소재 및 유통량 전산관리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4.11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33)
10.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도입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자율적으로 품질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 ○ 품질책임자는 품질관리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정기 의무교육 부여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전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의료기기법 (‘14.7.29. 시행)
				식약처 의료기기품질과 (043-230-0455)
11.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 체계 일원화		○ 체외진단 제품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 모든 체외진단 제품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하여 관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4.11.10)
		○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	○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업자를 통해 구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2.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 기관 통합 관리	① 시험· 검사기관 관리 규정통합	○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령에 서 규정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 요건 및 절차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절차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과징금·과태료의 산정·부과 세부기준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7.31. 시행) 식약처 검사제도과 (043-719-1811)
	② 국제 기준과의 조화	○ 기본적인 검사기관 준수사 항만 규정	○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기준 도입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취소 요건 및 절차 명시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7.31. 시행) 식약처 검사제도과 (043-719-1811)
	③ 시험· 검사능력 제고	○ 일부 분야만 검사능력관리 및 교육 의무화	○ 시험·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방법 및 절차 ○ 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및 교 육기관 지정 등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7.31. 시행) 식약처 검사제도과 (043-719-1811)
	④ 산업 지원· 육성	○ 일시적·단기적 사업	○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세부사항 ○ 시험·검사 운영체계 확립 사업 추진 지원 ☞ (참고)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7.31. 시행)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식약처 검사제도과 (043-719-181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없음	다음 행위를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하는 행위 금지 ○ 새로운 순환출자 형성 ○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해명>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3.12.31.)	공정거래법 (‘14.7.2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44-200-4331)	
2. 과징금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강화	〈가중기준 조정〉 ① (반복 범위반 사업자 범위)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 〈감경기준 조정〉 ① (단순가담자) 감경상한 30% ② (조사협력)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협력시 감경상한 15% ③ (자진시정)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감경상한 30% ④ (CP운영) CP 모범운영업체 감경 인정 ⑤ (부담능력 감경)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50% 이내 감경,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금액이 적자 또는 자본잠식인 경우 50%	〈가중기준 조정〉 ① (반복 범위반 사업자 범위)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 〈감경기준 조정〉 ① (단순가담자) 감경상한 20% ② (조사협력)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협력시 감경상한 10% ③ (자진시정)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감경상한 10% ④ (CP운영) CP 모범운영업체 감경 폐지 ⑤ (부담능력 감경)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0% 이내 감경, 자본잠식을 50% 이상인 경우 50% 초과 감경,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과징	공정거래법 (‘14.8.21.)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과 감경,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경우 과징금 면제 ⑥ (시장·경제 여건 감경) 별도의 감경사유 인정	금 면제 ⑥ (시장·경제 여건 감경) 별도의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 고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해명>과징금부과고시 개정(2014.2.14.)	
3. 보증기간 확대 등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 개선	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기한 명시	○ 지급보증서 교부 시점과 관련한 규정 없음	○ 건설하도급 관련하여 위탁일로부터 30일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규정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해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14. 4. 28)	하도급법 ('14.11.2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②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기간 명확화	○ 대금 지급보증 기간은 하도급대금 지급일	○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넘어서 어음 등의 만기일까지 지급보증 기간을 연장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해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 통과(2014. 4. 28)	하도급법 ('14.11.2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③ 지급 보증 면제 사유 소멸 시 지급 보증 의무 구체화	○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시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필요 없음	○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시점 기준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해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 통과(2014. 4. 28)	하도급법 ('14.11.2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④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이행 보증 청구 제한	○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 청구 가능	○ 지급보증을 한 원사업자만 계약이행 보증 증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해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14. 4. 28)	하도급법 ('14.11.2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4.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 지역 설정 및 보호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 없음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반드시 영업 지역을 설정해야 함 ○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 금지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 2. 4.)	가맹사업법 ('14.8.1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638)
조 달 청				
1.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① 창업 초기기업의 범위	○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14.7월)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②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신청요건	○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고시 ('14.7월)
				조달청 우수제품과 (070-4056-72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기업업체 수주기회 확대		○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	○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5년으로 확대·일원화하고, 만점 기준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 이내로 완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14.8월)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8)
관 세 청				
1. 해외지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① 목록통관 대상 확대	○ 6개 품목(Positive 방식)	○ 전 품목 원칙(negative 방식)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14.6.16)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②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 폐지	○ 복잡한 지정요건을 갖춰 지정	○ 신고제 전환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14.6.16)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2. 사후관리물품의 휴일 긴급상황 발생시 '사후 수출승인' 시행		○ 사후관리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 가능	○ 사후관리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 수출한 후 공휴일의 다음날에 수출 승인 신청 가능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14.7.1)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2)